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재무회계 관리(예산)

한국보육진흥원 정책사업지원단 품질지원팀

김 성 여

Contents

1 2022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원리 및 절차

3 예산의 이해

1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 2022년 보육료 지원단가

2021

정부지원보육료

연령	기본보육	
만0세	484,000원	
만1세	426,000원	
만2세	353,000원	
만3~5세	240,000원 (21.01~02)	260,000원 (21.03~)
장애아	502,000원	

기관보육료

연령	기본보육
만0세	528,000원
만1세	287,000원
만2세	194,000원
장애아	587,000원

야간연장 보육료

3,200원
(지원한도 192,000원)

야간연장 장애아보육료

4,200원
(지원한도 252,000원)

2022

정부지원보육료

연령	기본보육	
만0세	499,000원	
만1세	439,000원	
만2세	364,000원	
만3~5세	260,000원 (22.01~02)	280,000원 (22.03~)
장애아	532,000원	

기관보육료

연령	기본보육
만0세	570,000원
만1세	310,000원
만2세	210,000원
장애아	633,000원

야간연장 보육료

동일

야간연장 장애아보육료

동일

1 2022년 보육료 지원단가

2021

만0~5세 보육료

- (주의)' 18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2022

만0~5세 보육료

-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2 인건비(보육예산지원)

2021

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국공립 1호봉: 1,940,8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 장애통합보육 교사인건비지원 월 169만3천원
-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2022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국공립 1호봉: 2,018,4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 장애통합보육 교사인건비지원 월 1,717천원
-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인건비 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만60세까지 지원)

2 인건비(보육예산지원)

2021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 월급여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000원
- 사용자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퇴직적립금 적립,4대 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 준수)

- 근무수당 지원 : 야간연장반별: 월 46만1천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000원
- 사용자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퇴직적립금 적립, 4대 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 준수)

2022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 월급여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92,000원
- 사용자부담금의 30%(78,600원)가 반영되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퇴직적립금 적립,4대 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 준수)

- 근무수당 지원 : 야간연장반별: 월 467,000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92,000원
- 사용자부담금의 30%(78,600원)가 반영되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퇴직적립금 적립, 4대 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 준수)

2 인건비(보육예산지원)

2021

보조교사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11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누리보조교사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11천원(4시간 기준)* 이상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2022

보조교사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25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누리보조교사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25천원(4시간 기준)* 이상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2 인건비(보육예산지원)

2021 연장보육전담교사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 월 1,011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0천원 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신설>

자. 유의사항

<신설>

2022 연장보육전담교사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자. 유의사항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2 인건비(보육예산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2021

다. 지원내용

•지원단가: 일 83,14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2022

다. 지원내용

•지원단가: 일 84,32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3 법정부담금

2021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요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x4.5%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 고용보험: 월 보수액 x 1.05%
- 산재보험: 월보수액 x 0.7%

2022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요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x4.5%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
- 고용보험: 월 보수액 x 1.05%
- 산재보험: 월보수액 x 0.79%

4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 (행사비(313목))

2021

행사비(313목)

나. 행사비(313목)

1) 적용범위

○ 보육과정에서 영유아 및 부모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2) 일반사항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2022

행사비(313목)

나. 행사비(313목)

1) 적용범위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부모관련 행사도 지출 가능

2) 일반사항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4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 (인건비(100관))

2021

인건비

나. 일반사항

○ 수당(112, 122목)의 경우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을 말하며 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편성 필요

*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2022

인건비

나. 일반사항

○ 수당(112, 122목)의 경우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으로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편성해야함

* 제수당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4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 (인건비(100관))

2021

인건비

<세출항목>

1. 인건비(100관)

나. 일반사항

(중략)

○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는 경우 지급 가능)

2022

인건비

<세출항목>

1. 인건비(100관)

나. 일반사항

(중략)

○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사회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는 경우 지급 가능)

4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교직원 연수 · 연구비(311목))

2021

교직원 연수·연구비

가. 교직원 연수·연구비(311목)

1) 적용범위

○ 개인 학위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3) 인정조건

○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

2022

교직원 연수·연구비

가. 교직원 연수·연구비(311목)

1) 적용범위

- 개인 학위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3) 인정조건

○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5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2021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2022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아.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 (생 략)
- * (생 략)
- - (생 략)
- * < 신 설 >

2022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아.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전자출석부 등록 및 수정 기한이 경과된 출결정보는 수정 불가

5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결정

2021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시·도시자

- (생 략)

※ < 신설 >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1) 보육료 수납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중략)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도 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결정

2022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시·도시자

- (현행과 같음)

※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되며,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변경 불가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1) 보육료 수납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중략)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 중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결정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략)

○ (생략)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

2022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결정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략)

○ (생략)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 (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

5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2021

(신설)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2022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등을 최초로 수납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어린이집(아동이 속해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사항, 법 제 25조 및 제25조의 3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중 략)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중 략)

2022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중 략)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그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중 략)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시설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라. 고용보험

1)가입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8조)

(신설)

2022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시설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라. 고용보험

1)가입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8조)~~

마. 어린이집 4대보험 가입 대상

5 어린이집의 운영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2022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사용자	가입대상		가입 불가	
사용자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임의가입대상자 미지원)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다. 퇴직급여제도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1년 이상)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관리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라. 기타

(신설)

2022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다. 퇴직급여제도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미만 근속 로근자(근로계약 1년 이상)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관리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라. 기타

○ 3월 신학기 교사 채용을 위해 실무수습을 하였을 경우 교사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 지급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중략>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2022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중략>

※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2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또한, 공동영양사는 2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임면보고)되어야 하며 나머지 시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되어야 함.

5 어린이집의 운영

2021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학부모에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칠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신설>

2022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동의를 거칠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
-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 때에는 외부음식 제공 가능

5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021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 11인 이상 15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022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함.

* 영유아 수(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 11인 이상 15인 이내

6 보육교직원 관리

2021

보육교직원 임면

2)채용방법

- 근로계약은 가능한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여 채용한 경우, 삼일절(3.1)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시 해당일을 포함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2022

보육교직원 임면

- 근로계약은 가능한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어린이집의 연도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보육교직원 관리

2021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호봉 승급일은 매달 1일자로 시행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호봉관리 시스템 개발 이후)

2022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호봉 승급일은 매달 1일자로 시행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6 보육교직원 관리

2021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나. 교사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준용 <신설>

202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나. 교사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준용

(※ 미준수 시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 적용 제외)

※ 만1세반은 131,700원 이상, 만2세반은 109,200원 이상, 만3~5세반은 84,000원 이상 지급

6 보육교직원 관리

2021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 원칙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신설〉

202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 원칙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정원 21~39인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 할 수 있음.

다만, 적용 시기는 코로나19 종료시*까지로 함.

* 종료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미포함

6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1

나. 교직원의 겸임 제한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 기준

○ 특히,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가, 휴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함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신설>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2

나. 교직원의 겸임 제한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 기준

○ 특히,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가, 휴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함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휴게시간제외)

6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1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신설>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2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6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1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신설>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22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 함.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원리 및 절차

1 관련근거&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관련근거

0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02. 보육사업안내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1. 예산총계(총액) 주의 원칙
2.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 회계기준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 주체 : 어린이집 원장
  -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할 수 있음(반드시 위임장 작성)
- 회계연도 : 3. 1. ~ 익년도 2월 말
- 회계처리 방법 : 단식부기
- 회계관리

01.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어린이집 명의 통장** (원칙적으로 운영비 통장 1개)

※ 단, 세금관리 및 적립금 적립, 퇴직금 적립, 차입금 통장 개설 가능

02.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03.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04.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3 회계의 운영과정

Step 01 예산편성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 예산 편성

Step 02 예산집행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Step 03 추경예산편성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
필요사유에 따라 추경 또는
과목전용 진행

Step 04 결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월 1일 ~ 익년도 2월 말일

3 예산의 이해

0 예산서

- 회계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어린이집 수입·지출 계획서"와 같음
- 어린이집에서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서를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시·군·구청장에 예산안 제출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서에 계상
- 회계 운영 과정 중 예산서는 수정될 수 있음(추경)

1 보육료(01관) > 보육료(11항) > 정부지원보육료(111목)

적용범위

-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 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예산 편성

- 본예산 편성 시 2022년도 연령별 보육료 단가 및 아동 인원수 적용 편성
- 익년도 보육료(1~2월) 확정, 아동 인원수 증감 등으로 인한 추경 편성 시, 산출기초 구분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 **기본보육** - 만0세 : 499,000원 X 3명 X 12개월 - 만1세 : 439,000원 X 5명 X 12개월 - 만2세 : 364,000원 X 7명 X 12개월 - 만 3세이상: 280,000원 X 55명 X 12개월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보육료 X 일사용시간 X 월이용일 X 인원수 X 개월

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정부지원 보육료)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14 영유아 복리비	2,590,000	1,750,000	840,000	영유아 건강 검진 비용: 10,000원×70명= 700,000원 아동안전용품 구입비용: 15,000원×70개=1,050,000원 창의력 검사비용: 12,000원×70명= 840,000원 합 계: 2,590,000원
		315 급식·간식 재료비	61,992,000	58,592,000	3,400,000	영아 급간식비(보조포함): 2,400원×15명×21일×12개월 = 9,072,000원 유아 급간식비(보조포함): 3,000원×55명×21일×12개월 = 41,580,000원 교직원 급간식비: 3,000원×15명×21일×12개월 = 11,340,000원 합 계: 61,992,000원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0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1 정부지원 보육료	265,824,000	255,756,000	10,068,000	만 0 세: 499,000원×3명×12월=17,964,000원 만 1 세: 439,000원×5명×12월=26,340,000원 만 2 세: 364,000원×7명×12월=30,576,000원 만 3 세: 280,000원×15명×12월=50,400,000원 만 4 세: 280,000원×20명×12월=67,200,000원 만 5 세: 280,000원×20명×12월=67,200,000원 야간연장보육료:3,200원×2시간×16일×5명×12월=6,144,000원 합 계: 265,824,000원
		112 부모부담 보육료	50,907,000	50,824,000	83,000	만 3 세: 94,000원×15명×12월=16,920,000원 만 4,5 세: 70,000원×40명×12월=33,600,000원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129,000×3명=387,000원 합 계: 50,907,000원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illegible]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사업계획서의 기준인원 반영 및 세입·세출 기준 아동인원수 일치 확인

2 보육료(01관) > 보육료(11항) > 부모부담보육료(112)

적용범위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차액 보육료(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금지

예산 편성

- 기준액: 지자체 보육료 수납 한도액-정부지원 보육료
- 미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미지원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 보육일수 미달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등의 예산 금액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2 부모부담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만3~5세 - 만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정부지원보육료) × 인원수 × 개월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 인원수 × 개월수 - 외국인 아동 연장 보육료 × 인원수 × 개월수 -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 보육일수 미달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2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부모부담 보육료)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12 부모부담 보육료	50,907,000	50,824,000	83,000	만 3 세: 94,000원×15명×12월=16,920,000원 만 4,5 세: 70,000원×40명×12월=33,600,000원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129,000×3명=387,000원 합 계: 50,907,000원
					17,160,000	

지자체수납한도액-정부지원보육료
만 3 세: 374,000-280,000=94,000
만4-5세:350,000-280,000=70,000

지역	항목	세부항목	수납주기	민간/가정 한도액
00	보육료	2022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만3~5세)	월	374,000/374,000 350,000/350,000 350,000/350,000

2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부모부담 보육료)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889,079	544,942,960	85,946,119	
01	보육료		313,334,000	306,580,000	6,754,000	
	11	보육료	313,334,000	306,580,000	6,754,000	
		111 정부지원 보육료	262,464,000	255,756,000	6,708,000	만 0 세: 499,000원×3명×12월=17,964,000원 만 1 세: 439,000원×5명×12월=26,340,000원 만 2 세: 364,000원×7명×12월=30,576,000원 만 3 세: 280,000원×15명×12월=50,400,000원 만 4 세: 280,000원×20명×12월=67,200,000원 만 5 세: 280,000원×19명×12월=63,840,000원 야간연장보육료:3,200원×2시간×16일×5명×12월=6,144,000원 합 계: 262,464,000원
		112 부모부담 보육료	50,870,000	50,824,000	46,000	만 3 세: 94,000원×15명×12월=16,920,000원 만 4,5 세: 70,000원×40명×12월=33,600,000원 외국인 아동(만5세): 350,000×1명×12개월=4,200,000원

외국인 아동 인원수(미지원)에 대한 기본 보육아동 인원수 감액

3 수익자부담수입(02관) > 선택적보육활동비(21항) > 특별활동비(211목)

적용범위

-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 준수

예산 편성

- 세입 예산의 특별활동비(211목)과 세출 예산의 특별활동비지출(411목) 연계편성
- 24개월 원아에 따라 인원수, 개월수 반영 산출기초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수익자 부담수입	21 선택적 보육 활동비	211 특별 활동비	- 과학 30,000원 × 55명 × 12월 - 체육 30,000원 × 55명 × 12월 [실수납액 적용]

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특별활동비)

위탁보육비용(전입금) 세입 예산 미편성시 100% 연계편성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기기체특성함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illegible]12월=9,600,000원 아산연장이동 수수료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12월=5,952,000원 12월=9,600,000원 아산연장이동 수수료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4 수익자부담수입(02관) > 기타필요경비(22항) > 기타필요경비(221목)

적용범위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분실 등으로 태그를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예산 편성

- 세입 예산의 기타필요경비(221목)과 세출 예산의 기타필요경비지출(421목) 연계편성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과 수납주기를 준수하여 편성

수납항목별 분리하여 산출근거 작성(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비,특성화비,아침·저녁식대 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수익자 부담수입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 입학준비금 100,000원 × 15명 × 1회 - 현장학습비 20,000원 × 67명 × 12회 - 행 사 비 10,000원 × 67명 × 2회 - 차량운행비 20,000원 × 40명 × 12월 - 야간연장석식 30,000원 × 5명 × 12월 - 지자체 특성화비용 30,000원 × 62명 × 12월

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

보육료 대장

번호	성명	지원대상	구분	월별 징수실적(날짜,금액) 12월	1월	2월	비고 (반환금등)
1	김00	일반아동	입학금		1/25 100,000		
2	이00	일반아동	입학금	12/30 100,000			
3	박00	일반아동	입학금			2/10 100,000	
4	조00	일반아동	입학금		1/20 100,000		
5	안00	일반아동	입학금				
6	강00	일반아동	입학금	12/29 100,000			
7	최00	일반아동	입학금			2/13 100,000	
8	진00	일반아동	입학금				
9	유00	일반아동	입학금		1/22 100,000		
10	변00	일반아동	입학금			2/7 100,000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활동비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입학금을 21년 회계 연도에 미리 수납 받은 경우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2월말 통장 잔액중 해당 금액을 22년 기타필요경비 세입 예산에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으로 예산 이월 편성 (미리 수납한 입학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는다)

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8,352,000	8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금이자수입:20,000원 ×2회=40,000원 합 계: 4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12,000원×40명×12월=5,760,000원 연장반운영 선생님 30,000원×23명 ×12월=8,280,000원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KB국민은행

거래일 DATE	내 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868,940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20228 잔액 *868,940

세입 예산서

(단위: 원)

						산출기초
		잡수입				습교사 실습비: 100,000원×2명=200,000원 량 매각대금: 4,200,000원 안전공제회 환급금: 20,000원×1명×5회=100,000원 운영카드(체크) 캐쉬백 포인트 환급금: 23,840원×12회=286,080원 합 계: 4,786,080원
09	전년도 이월액		68,940	20,991	47,949	
	91	전년도 이월액	68,940	20,991	47,949	
		911 전년도 이월금	68,940	20,991	47,949	전년도 이월금: 68,940원 합 계: 68,940원
		9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0	0	0	

입학금을 21년 회계 연도에 미리 수납 받은 경우 2월말 통장 잔액을 기타필요경비(선수납 이월금 처리)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 편성

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

위탁보육비용(전입금) 세입 예산 미편성시 100% 연계편성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21	보육활동비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보육활동비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1					
관	전년도이월액	발 의		2022.03.01.	
항	전년도이월액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목	전년도이월금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금육만팔천구백사십원정 (₩68,940)					
적 요	전년도 이월금				
비 고	2월말 통장잔액: 868,940원중 순수이월금: 68,940원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800,000원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2					
관	수익자부담금	발 의		2022.03.01.	
항	기타필요경비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목	기타필요경비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금팔십만원정 (₩800,000)					
적 요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비 고	2월말 통장잔액: 868,940원중 순수이월금: 68,940원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800,000원				

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

현 금 출 납 부

담당	원장

2022 년 3월

연월일	적요	계정과목	증빙서 번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3/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01	68,940		68,940
3/1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기타필요경비	02	800,000		868,940
3/2	새싹반 최00,김00,오00의	특별활동비	03	180,000		1,048,940

KB국민은행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차례	거래일 DATE	내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868,940	
01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02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03	20220228 잔액				＊868,940	

5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인건비보조금(31항) > 인건비보조금(311목)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정부미지원시설이 보조 받는 인건비 지원금

예산 편성

-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직책에 따른 호봉에 지원비율 × 개월수
- 정부비지원시설: 정부지원금액 × 개월수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및 지원금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조리사 지원금 : 800,000원 × 1명 × 12월 야간연장 교사 지원금 : 1,492,000원 × 1명 × 12월 연장전담 교사 지원금: 1,025,000원 × 3명 × 12월 보조교사 지원금: 1,025,000원× 1명 × 12월 연장,보조교사 사회보험및 퇴직금지원금:56,220원× 4명 × 12월

5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인건비 보조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3	보조금 및 지원금		234,808,360	199,946,800	34,861,560	
	31	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311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조리사 지원금: 800,000원×1명×12월=9,600,000원 보조교사지원금: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연장반교사지원금: 1,025,000원×3명×12월=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지원금:1,492,000원×1명×12월= 0원 연장반,보조교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원금: 56,220원×4명×12월=2,698,560원 대체교사 인건비: 84,320원×1명×10일=843,200원 대체조리사 인건비: 84,320원×1명×5일=421,600원 **합 계: 80,667,360원**

5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인건비 보조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3	보조금 및 지원금		234,808,360	199,946,800	34,861,560	
	31	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311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조리사 지원금: 800,000원×1명×12월=9,600,000원 보조교사지원금: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연장반교사지원금: 1,025,000원×3명×12월=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지원금:1,492,000원×1명×12월= 0원 연장반,보조교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원금: 56,220원×4명×12월=2,698,560원 대체교사 인건비: 84,320원×1명×10일=843,200원 대체조리사 인건비: 84,320원×1명×5일=421,600원 **합 계: 80,667,360원**
	32	운영보조금	145,836,000	119,848,000	25,988,000	
		321 기관 보육료	56,106,000	51,996,000	4,110,000	만0세: 528,000원×2명× 1월=1,056,000원 570,000원×3명×11월=18,810,000원 만1세: 310,000원×5명×12월=18,600,000원 만2세: 210,000원×7명×12월=17,640,000원 **합 계: 56,106,000원**
		322 연 장 보육료	14,688,000	12,240,000	2,448,000	만0세반: 3,000원×2시간×18일×3명 ×12월=3,888,000원 영아반: 2,000원×2시간×18일×5명 ×12월=4,320,000원 유아반: 1,000원×2시간×18일×15명×12월=6,480,000원 **합 계: 14,688,000원**
		32				

인건비 보조금 세출 예산 인건비(관) 연계편성
지원금 이상의 금액 및 최저임금이상 세출 예산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3,724,500원 × 12개월 = 44,694,000원 **합 계: 44,694,000원**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원장 활동비수당:200,000원× 12개월 = 2,400,000원 명절휴가수당: 100,000원 × 3회 = 300,000원 **합 계: 2,700,000원**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199,840	273,266,880	10,932,960	
		121 보육 교직원급여	276,999,840	267,866,880	9,132,960	주임교사: 2,123,000원 × 1명 × 12개월 = 25,476,000원 교 사: 2,018,400원 × 5명 × 12개월 =121,104,000원 누리보조: 1,025,000원 × 1명 × 12개월 = 12,300,000원 보조교사: 1,025,000원 × 1명 × 12개월 =12,300,000원 연장반교사: 1,025,000원× 3명 × 12개월 =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조 리 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운 전 원: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합 계: 276,999,840원**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주임수당: 100,000원×1명×12개월 = 1,200,000원 아동인권선임수당:50,000원×1명×12개월 = 600,000원 건강관리수당:100,000원 ×6명× 1회 =600,000원 자기계발비수당:100,000원 ×6명×1회 =600,000원 명절·휴가비: 100,000원 ×14명 ×3회 = 4,200,000원 **합 계: 7,200,000원**

5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인건비 보조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3	보조금 및 지원금		234,808,360	199,946,800	34,861,560	
	31	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311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조리사 지원금: 800,000원×1명×12월=9,600,000원 보조교사지원금: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연장반교사지원금: 1,025,000원×3명×12월=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지원금:1,492,000원×1명×12월= 0원 연장반,보조교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원금: 56,220원×4명×12월=2,698,560원 대체교사 인건비: 84,320원×1명×10일=843,200원 대체조리사 인건비: 84,320원×1명×5일=421,600원 **합 계: 80,667,360원**
	32	운영보조금	145,836,000	119,848,000	25,988,000	
		321 기관 보육료	56,106,000	51,996,000	4,110,000	만0세: 528,000원×2명× 1월=1,056,000원 570,000원×3명×11월=18,810,000원 만1세: 310,000원×5명×12월=18,600,000원 만2세: 210,000원×7명×12월=17,640,000원 **합 계: 56,106,000원**
		322 연 장 보육료	14,688,000	12,240,000	2,448,000	만0세반: 3,000원×2시간×18일×3명 ×12월=3,888,000원 영아반: 2,000원×2시간×18일×5명 ×12월=4,320,000원 유아반: 1,000원×2시간×18일×15명×12월=6,480,000원 **합 계: 14,688,000원**

인건비 보조금 세출 예산 인건비(관) 연계편성
지원금 이상의 금액 및 최저임금이상 세출 예산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30	기타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131 기 타 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대체교사(보조포함): 84,320원×1명×15회 = 1,264,800원 대체조리사(보조): 84,320원 ×3명×2회 = 421,600원 **합 계: 1,686,400원**
	140	기관부담금	59,177,994	54,343,360	4,834,634	
		141 법 정 부담금	33,476,274	31,566,120	1,910,154	국민연금: 334,953,840원×4.5% = 15,072,923원 건강보험: 334,953,840원×3.495% = 11,706,637원 장기요양보험: 11,706,637 ×12.27% = 1,436,405원 고용보험: 284,199,840원×1.05% = 2,984,099원 산재보험: 284,199,840원×0.79% = 2,245,179원 기타종사자 고용보험:1,686,400원×1.05% = 17,708원 기타종사자 산재보험:1,686,400원×0.79% = 13,323원 **합 계: 33,476,274원**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5,701,720	22,772,240	2,924,480	퇴직 적립금: 284,199,840원 × 1/12 = 23,683,320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68,200원× 12개월 = 2,018,400원 **합 계: 25,701,720원**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공기청정기 렌탈((보조포함): 24,900원 × 12회 = 298,800원 인쇄(소봉투) 비용: 50,000원×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10,000원× 12회 = 120,000원 정화조 청소비용: 84,000원× 1회 = 84,000원 제증명 수수료: 1,000원× 12회 = 12,000원

6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기관보육료(321목)

적용범위

-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직장·협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만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편성

- 후불제 개념

매월 말일(24시)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생성
따라서, 익월에 전월 기준의 기관보육료 산정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21 기관 보육료	- 만0세: 570,000×3명×12개월 - 만1세: 310,000×5명×12개월 - 만2세: 210,000×5명×1개월 - 만2세: 210,000×7명×11개월

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관보육료)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	운영보조금	145,920,000	119,848,000	26,072,000	
		321 기관 보육료	56,190,000	51,996,000	4,184,000	만0세: 570,000원×2명×1월=1,140,000원 570,000원×3명×11월=18,810,000원 만1세: 310,000원×5명×12월=18,600,000원 만2세: 210,000원×7명×12월=17,640,000원 합 계: 56,190,000원
		322 연 장 보육료	14,688,000	12,240,000	2,448,000	만0세반: 3,000원×2시간×18일×3명 ×12월=3,888,000원 영아반: 2,000원×2시간×18일×5명 ×12월=4,320,000원 유아반: 1,000원×2시간×18일×15명×12월=6,480,000원 합 계: 14,688,000원

7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연장보육료(322목)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편성

- 보육 통합 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장 보육료 생성
- 자동출결시스템상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연장 보육료 생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2 연장 보육료	- 만0세 3,000원× 1시간×20일× 1명×12월 - 장애아 3,000원× 1시간×20일× 1명×12월 - 영아반 2,000원× 2시간×20일× 3명×1월 - 영아반 2,000원× 2시간×20일× 5명×11월 - 유아반 1,000원× 2시간×20일×15명×12월

8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공공형운영비(323목)

적용범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예산 편성 어린이집의 담임 교사 수, 반운영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산정하고 지급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2 공공형 운영비	-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0,000원 × 5명 × 12월 - 교육·환경개선비 15,000원 × 70명 × 12월 - 유아반 운영비 600,000원 × 3개반 × 12월

9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그밖의지원금(324목)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 운영비 등

예산 편성

-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출 계정 과목에서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세출 예산 과목에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3 그 밖의 지원금	- 누리지원금 58,000원x 55명x 12월 -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 x 1회 - 냉난방비 50,000원 x 3회 -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 x 12월 - 급간식비지원금 10,000원 x 70명 x12월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그밖의 지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지원금 이상 연계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2,990,000	2,590,000	4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7명 ×2회 =1,68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보조): 80,000원×2명 = 160,000원 승급교육(보조): 70,000원×2명 = 7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2,99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3,697,200	1,500,000	영아반 교재. 교구 구입비: 7,000원 ×15명×12월 =1,260,000원 유아반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 8,000원×55명×12월 = 5,280,000원 누리반 교재. 교구 구입비(누리지원금):38,420원×55명×12월 = 25,357,200원 누리반교재교구제작비용: 50,000원×3개반×12월 = 1,800,000원 교재교구비(보조): 800,000원 도서관 동화책(도서 구입 후원금 지출분): 0,000원×70권=700,000원 **합 계: 35,197,200원**
		313 행사비	4,230,000	3,796,770	433,230	부모참여수업: 200,000원×1회 = 200,000원 오리엔테이션: 250,000원×1회 = 250,000원 얼굴페인팅 및 각종 원내행사: 200,000원×12회 = 2,400,000원 어버이날행사: 160,000원×1회 = 160,000원 가을 운동회: 300,000원×1회 = 300,000원 어린이날 큰잔치: 500,000원×1회 = 500,000원 명절행사: 300,000원×1회 = 300,000원 식목일행사: 120,000원×1회 = 120,000원 **합 계: 4,230,000원**
		314 영유아 복리비	2,590,000	1,750,000	840,000	영유아 건강 검진 비용: 10,000원×70명= 700,000원 아동안전용품 구입비용: 15,000원×70개=1,050,000원 창의력 검사비용: 12,000원×70명= 840,000원 **합 계: 2,590,000원**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그밖의 지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지원금 이상 연계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소독비용: 30,000원 × 12회 = 360,000원 00연합회 비용: 150,000원× 1회 = 150,000원 00장부 수수료: 20,000원× 12회 = 240,000원 프린터 렌탈 사용료: 30,000원× 12회 = 36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요금(보조): 11,000원× 12회 = 132,000원 놀이터 점검 수수료: 88,000원× 1회 = 88,000원 살균 소독수 구입비: 19,000원× 6회 = 114,000원 식기세척 세제 구입비:40,000× 3회 = 120,000원 공인증 발급 수수료: 4,400원× 1회 = 4,400원 배송비: 3,000원× 10회 = 30,000원 가정 키트 배송료: 3,000원× 70명×2회 = 420,000원 zoom 사용 수수료: 20,000원× 12회 = 240,000원 주방용품 구입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전자출결시스템 유지 관리비: 38,500원× 12월=462,000원 전기안전점검: 50,000원 ×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6,000원 × 12회 = 72,000원 평가인증 수수료: 300,000원 × 1회 = 300,000원 월간 도서 구입비: 50,000원× 12회 = 600,000원 인쇄비: 150,000원 × 1회 = 150,000원 현수막 구입비: 234,000원 × 1회 = 234,000원 리플렛: 150,000원 × 1회 = 150,000원 문구류: 60,000원 × 12회 = 720,000원 사무용품구입비: 50,000원 × 12회 =600,000원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비: 60,000원 × 1회 = 60,000원 한국 어린이집 연합회비: 80,000원 × 1회 = 80,000원 회계프로그램사용료: 20,000원 × 12월 = 240,000원 우편요금: 10,000원 × 12회 = 120,000원 의약품 구입비: 150,000원 × 2회 = 300,000원 정수기 렌탈비용: 34,500원 × 12월 = 414,000원 소독비용: 20,000원 × 12월 = 240,000원 아동 치료비: 35,000원 × 12회 = 420,000원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그밖의 지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15 급식·간식 재료비	61,992,000	58,592,000	3,400,000	영아 급간식비(보조포함): 2,400원×15명×21일×12개월 = 9,072,000원 유아 급간식비(보조포함): 3,000원×55명×21일×12개월 = 41,580,000원 교직원 급간식비: 3,000원×15명×21일×12개월 = 11,340,000원 **합 계: 61,992,000원**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식수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500	적립금		0	0	0	
	510	적립금	0	0	0	
		511 적립금	0	0	0	**합 계: 0원**
600	상환 반환금		2,836,600	0	2,836,600	
		612 장기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장기차입 이자: 20,000,000원 ×2.9%= 580,000원 장기차입 원금 상환: 334,000원 ×6개월= 2,004,000원 **합 계: 2,584,000원**

지자체 간식비 지원금을 합산한 1,900원이상 +1인당 지원금(500원)=2,400원이상 세출 연계 편성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그밖의 지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지원금 이상 연계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5 차량비	3,300,000	2,700,000	600,000	차량 수리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차량 유류대(보조): 20,000원 × 12회 = 2,400,000원 차량 소모품 구입비: 150,000원 × 4회 = 600,000원 합 계: 3,300,000원
		216 복리 후생비	4,572,000	4,835,000	△263,000	교직원 건강검진비: 30,000원 × 15명= 450,000원 교직원 피복비: 100,000원 × 15명 = 1,500,000원 병원 치료비: 10,000원 ×15명 = 150,000원 급량비: 8,000원 × 7명 ×12회 =672,000원 교직원간식비: 10,000원×15명×12회 =1,800,000원 합 계: 4,572,000원
		217 기타 운영비	2,160,000	1,920,000	240,000	설치·인가 당시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80,000,000원× 2.7% =2,160,000원 합 계: 2,160,000원
	220	업무추진비	5,280,000	4,620,000	660,000	
		221 업무 추진비	1,300,000	1,100,000	200,000	종(시)무식: 50,000원 ×1회 = 50,000원 직원경조사비: 50,000원 ×3회 = 150,000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20,000원 ×5회 = 100,000원 보육교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 250,000원 × 4회 = 1,000,000원 합 계: 1,300,000원
		222 직책급	3,360,000	3,000,000	360,000	280,000원 × 12월 = 3,360,000원 합 계: 3,360,000원
		223 회의비	620,000	520,000	100,000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원×4회 = 200,000원 부모회의: 30,000원×2회 = 60,000원 교사회의: 30,000원×12회 = 360,000원 합 계: 620,000원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그밖의 지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지원금 이상 연계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2,990,000	2,590,000	4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7명 ×2회 =1,68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보조): 80,000원×2명 = 160,000원 승급교육(보조): 70,000원×2명 = 7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2,99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3,697,200	1,500,000	영아반 교재. 교구 구입비: 7,000원 ×15명×12월 =1,260,000원 유아반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 8,000원×55명×12월 = 5,280,000원 누리반 교재. 교구 구입비(누리지원금):38,420원×55명×12월 = 25,357,200원 누리반교재교구제작비용: 50,000원×3개반×12월 = 1,800,000원 교재교구비(보조): 800,000원 도서관 동화책(도서 구입 후원금 지출분): 0,000원×70권=700,000원 합 계: 35,197,200원
		313 행사비	4,230,000	3,796,770	433,230	부모참여수업: 200,000원×1회 = 200,000원 오리엔테이션: 250,000원×1회 = 250,000원 얼굴DR만이집 및 각종 원내행사: 200,000원×12회 = 2,400,000원 어버이날행사: 160,000원×1회 = 160,000원 가을 운동회: 300,000원×1회 = 300,000원 어린이날 큰잔치: 500,000원×1회 = 500,000원 명절행사: 300,000원×1회 = 300,000원 식목일행사: 120,000원×1회 = 120,000원 합 계: 4,230,000원
		314 영유아 복리비	2,590,000	1,750,000	840,000	영유아 건강 검진 비용: 10,000원×70명= 700,000원 아동안전용품 구입비용: 15,000원×70개=1,050,000원 창의력 검사비용: 12,000원×70명= 840,000원 합 계: 2,590,000원

10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자본보조금(33항) > 자본보조금(331목)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예산 편성 ● 당해 연도 지원금 지급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 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5,000,000원 x 1회 -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 1,980,000원 -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지원금 150,000원 - 보존식 식기 냉동고 구입 지원금 700,000원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자본보조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24 그 밖의 지원금	75,042,000	55,612,000	19,430,000	누리 지원금: 58,000원×55명×12월=38,280,000원 야간연장지원금: 400,000원×12월=4,800,000원 교재교구 지원금: 800,000원×1회=800,000원 냉난방비 지원금: 200,000원×4회=80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12회=132,000원 급간식비 지원금:10,000원×70명×12월=8,400,000원 고용창출 장려금: 2,400,000원×2명×4회=19,200,000원 차량 지원금: 200,000원×1대×12월 = 2,400,000원 보수교육지원금: 80,000원×2명×1회= 160,000원 승급교육지원금: 70,000원×1명×1회=70,000원 합 계: 75,042,000원
	33	자본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331 자본 보조금	8,305,000	1,650,000	6,655,000	환경개선 지원금: 5,000,000원×1회=5,000,000원 인덕션 지원금: 1,000,000원×1회=1,000,000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1,980,000원×1회=1,980,000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금: 325,000원×1회=325,000원 합 계: 8,305,000원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보조금 목적에 맞게 세출 예산 연계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620	반환금	252,600	0	252,600	
		621 보조금 반환금	252,600	0	252,600	
		622 보호자 반환금	0	0	0	합 계: 0원
		623 법인회계 전출금	0	0	0	합 계: 0원
700	재산조성비		41,385,000	9,797,210	31,737,790	
	710	시설비	26,030,000	6,562,210	19,467,790	
		711 시설비	25,500,000	6,352,210	19,147,790	놀이터 공사비용(보조): 5,500,000원× 1회= 5,500,000원 보육실 실내 공사비용(장기차입):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5,500,000원
		712 시설장비 유지비	530,000	210,000	320,000	스프링클러 수리비용: 350,000원 × 1회= 350,000원 보일러 수리비용: 180,000원 × 1회= 180,000원 합 계: 530,000원
	720	자산구입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721자산취득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인덕션 구입비(보조):1,000,000원×1대= 1,000,000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보조):1,980,000원×1대= 1,980,000원 장남감 살균기 구입비(보조): 325,000원×1대= 325,000원 차량 구입비(일시납부금): 9,200,000원 차량 할부금: 200,000원 × 12회 = 2,400,000원 에어컨 구입비: 600,000원× 1대= 600,000원 합 계: 15,505,000원
800	과년도지출		0	0	0	

11 전입금(04관) > 전입금(41항) > 전입금(411목)

적용범위

-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비 지원금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은 "전입금" 으로 수입 관리하고, 지출 시 위탁보육에 따른 부모부담분(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우선 회계처리 후 잔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전출금 충당 금지)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 **원장**전입 1,000,000원 x 1회 - **재단**전입 2,000,000원 x 1회 - 직장보육시설위탁비용 140,000 x 2명 x 12월

1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입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8,352			
		411 전입금	3,360,000	0	3,360,000	140,000×2명×12개월=3,360,000 합 계: 3,360,000원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12,000원×40명×12월=5,760,000원 연장반아동 석식대:30,000원×23명 ×12월=8,280,000원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5명×12월=7,800,000원 행 사 비: 5,000원×65명×12월=3,9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0명×12월=5,760,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연장반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280,000원

전입금으로 편성된 직장보육시설 위탁보육 아동 인원수 필요경비 세입 예산 감액 편성

1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입금)

연계편성 예외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3,000,000	26,872,000	16,128,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5명×12월=7,800,000원 행 사 비: 5,000원×65명×12월=3,9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0명×12월=5,76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000원×40명×12월=9,600,000원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전입금으로 수입된 위탁보육비용의 지출시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하되 지출 결의서상 전입금의 지출분으로 부기작성토록 함(연계편성 예외)

12 전입금(04관) > 차입금(42항) > 단기차입금(421목)

적용범위

- 일시운영 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 단기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 할 수 있는 차입금 범위 내 차입 가능
- 금융기관 조달 원칙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하나, 개인 간 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출 시, 제1금융권 대출 금리 준용)
-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단,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대출)』 개설을 통한 차입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인정 가능

12 전입금(04관) > 차입금(42항) > 단기차입금(421목)

예산 편성

- 세입 예산의 **단기차입금(421목)**과 세출예산의 **단기차입금상환(611목)**과 **연계편성**
- 차입금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 K은행마이너스통장 3,000,000원 x 1회

12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단기차입금)

추경 1차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4	전입금		22,000,000	0	22,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2,000,000	0	22,000,000	
		421 단기 차입금	2,000,000	0	2,000,000	단기차입금: 2,000,000×1회=2,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422 장기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05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1 지정 후원금	700,000	0	700,000	도서 후원금: 10,000원×70명=700,000원 합 계: 700,000원

1차 추경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500	적립금		0	0	0	
	510	적립금	0	0	0	
		511 적립금	0	0	0	합 계: 0원
600	상환. 반환금		4,584,000	0	4,584,000	
	610	차입금 상환	4,584,000	0	4,584,000	
		611 단기 차입금 상환	2,000,000	0	2,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2,000,000원 합 계: 2,000,000원
		612 장기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장기차입 이자: 20,000,000원 ×2.9%= 580,000원 장기차입 원금 상환: 334,000원 ×6개월= 2,004,000원 합 계: 2,584,000원

13 전입금(04관) > 차입금(42항) > 장기차입금(422목)

적용범위

-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한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조달 원칙(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고금리 상품은 불가)
- 토지, 건물 등 자산증식(신·증축) 목적 불가
- <u>설치·인가 시 대표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액을 포함하여 50%로 제한</u>
  (임차건물은 전·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차입금액, 연간이자, 차입사유·용도 및 상환계획·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장기차입 시, 상환기간(거치기간 제외) 5년 이내 (부득이한 사정 시 지자체 협의 후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차입 한도액 :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의 5%이내

  예시) 상환기간 5년인 경우, 당해연도 총 보육료 수입 x 5년 x 5%
  500,000,000 x 5 x 0.05=125,000,000 (년 상환 시 25,000,000+이자)
- 사전에 적립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장기차입보다는 적립금을 우선적 사용

13 전입금(04관) > 차입금(42항) > 장기차입금(422목)

예산 편성

- 세입 예산의 장기차입금(422목)과 세출예산의 장기차입금상환(612목) 해당 연도 상환 계획에 따라 연계 편성
- 장기차입금 차입 한도액은 '결산'의 총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예산액 대비 산출하였더라도, 그 한도액은 결산 시 금액을 고려해야 함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2 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K은행) 30,000,000원 x 1회

1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상한액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0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1 정부지원 보육료	265,824,000	255,756,000	10,068,000	만 0 세: 499,000원×3명×12월=17,964,000원 만 1 세: 439,000원×5명×12월=26,340,000원 만 2 세: 364,000원×7명×12월=30,576,000원 만 3 세: 280,000원×15명×12월=50,400,000원 만 4 세: 280,000원×20명×12월=67,200,000원 야간연장보육료:3,200원×2시간×16일×5명×12월=6,144,000원 합 계: 265,824,000원
		112 부모부담 보육료	50,907,000	50,824,000	83,000	만 3 세: 94,000원×15명×12월=16,920,000원 만 4,5 세: 70,000원×40명×12월=33,600,000원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129,000×3명=387,000원 합 계: 50,907,000원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3	보조금 및 지원금		234,808,360	199,946,800	34,861,560	
	31	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311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조리사 지원금: 800,000원×1명×12월=9,600,000원 보조교사지원금: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연장반교사지원금: 1,025,000원×3명×12월=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지원금:1,492,000원×1명×12월= 0원 연장반,보조교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원금: 56,220원×4명×12월=2,698,560원 대체교사 인건비: 84,320원×1명×10일=843,200원 대체조리사 인건비: 84,320원×1명×5일=421,600원 합 계: 80,667,360원
	32	운영보조금	145,836,000	119,848,000	25,988,000	
		321 기관 보육료	56,106,000	51,996,000	4,110,000	만0세: 528,000원×2명× 1월=1,056,000원 570,000원×3명×11월=18,810,000원 만1세: 310,000원×5명×12월=18,600,000원 만2세: 210,000원×7명×12월=17,640,000원 합 계: 56,106,000원
		322 연 장 보육료	14,688,000	12,240,000	2,448,000	만0세반: 3,000원×2시간×18일×3명 ×12월=3,888,000원 영아반: 2,000원×2시간×18일×5명 ×12월=4,320,000원 유아반: 1,000원×2시간×18일×15명×12월=6,480,000원 합 계: 14,688,000원
						합 계: 0원

장기차입(422목) 한도액=총보육료 수입 ×상환연도×5% 이내 (결산기준 감안)
265,824,000+50,907,000+56,106,000+14,688,000= 387,525,000×5년×5%= 96,881,250

1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장기차입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장기차입금 적정 사용처에 따른 세출 예산 예산 연계 편성

04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421	단기 차입금	0	0	0	합 계: 0원
422	장기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05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1	지정 후원금	700,000	0	700,000	도서 후원금: 10,000원×70명=700,000원 합 계: 70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	40,850,000	5,971,540	34,878,460	
		시설비	25,950,000	3,939,000	22,011,000	
		711 시설비	25,350,000	995,000	24,355,000	놀이터 공사비용: 5,350,000원× 1회= 5,350,000원 시설 공사비용: 20,000,000원× 1회= 20,000,000원 합 계: 25,350,000원
		712 시설장비 유지비	600,000	2,944,000	△2,344,000	보일러 수리비용: 600,000원 × 1회= 600,000원 합 계: 600,000원
	720	자산구입비	14,900,000	2,032,540	12,867,460	
		721자산취득비	14,900,000	2,032,540	12,867,460	에어컨 구입비: 550,000원× 1대= 600,000원 차량 구입비(일시납부금): 9,200,000원 차량 할부금: 250,000원 × 12회 = 3,00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610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611 단기 차입금 상환	0	0	0	합 계: 0원
		612 장기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장기차입 이자: 20,000,000원 ×2.9%= 580,000원 장기차입 원금 상환: 334,000원 ×6개월= 2,004,000원 합 계: 2,584,000원

1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장기차입금)

출처:경기도

장기차입 및 상환계획서

○○○어린이집

☐ 차입목적 :

☐ 차입개요

(단위 : 천원)

차입일시	금융기관	차입금액	산 출 기 초	연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비고
					( )	

※ 장기차입금은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대표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액을 포함하여 50% 이내, 차입금액은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제한

☐ 장기차입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일시 (예정)	세 출 항 목			사 업 내 용	집행예정액	비고
	관	항	목			

☐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합계	원금	이자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연도별 장기차입금 상환금(612목) + 기타운영비(217목) + 적립금(511목) + 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계금액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14 기부금(05관) > 기부금(51항) > 지정후원금(511목)

적용범위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예산 편성

- '후원금 관리대장'에 입·출금 내역 관리하며, 현금 및 현물기부, 후원자, 용도 등 기재
-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 00단체 도서구입 후원금 1,000,000원 x 1회

1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지정후원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5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1 지정 후원금	700,000	0	700,000	도서 후원금: 10,000원×70명=700,000원 합 계: 700,000원
		512 비지정 후원금	1,000,000	0	1,000,000	바자회 수입금: 1,000,000원×1회=1,000,000원 합 계: 1,000,000원
06	적립금		9,701,370	11,221,500	△1,520,130	
	61	적립금	9,701,370	11,221,500	△1,520,130	
		611적립금 처분 수입	9,701,370	11,221,500	△1,520,130	1년미만 퇴직금 반환금(20년): 1,701,370×1회=1,701,370원 퇴직 적립금 인출금: 3,000,000원 적립금 만기환급금 : 5,000,000원 합 계:9,346,490원
07	과년도 수입		480,000	1,362,000	△882,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00	보육활동비		108,917,200	98,546,770	10,370,4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8,917,200	98,546,770	10,370,4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5,400,000	3,800,000	1,6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11명 ×2회 =2,640,000원 연구활동비 : 100,000원×6명×2회 = 1,20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 60,000원×8명 = 48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5,40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1,100,000	4,097,200	영아반 교재. 교구 구입비: 7,000원 ×15명×12월 =1,260,000원 유아반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8,000원×55명×12월 = 5,280,000원 누리반 교재. 교구 구입비(누리지원금): 38,420원×55명×12월 = 25,357,200원 누리반교재교구제작비용: 50,000원×3개반×12월 = 1,800,000원 교재교구비(보조금지출분): 800,000원 도서관 동화책(도서 구입 후원금 지출분):10,000원×70권=700,000원 합 계: 35,197,200원
		행사비	4,2300,000	3,796,770	433,230	부모참여수업: 200,000원×1회 = 200,000원 오리엔테이션: 250,000원×1회 = 250,000원 영[illegible]어린이집 및 각종 월[illegible]행사: 200,000원×12회 = 2,400,000원

지정 후원금의 경우 후원금의 목적대로 세출 예산 연계 편성

1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후원금 예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1. 후원금 수입 명세서

연번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1	21.5.3	비지정후원금 지역사회 후원금	00전자	1건	500,000	

2. 후원금 사용 명세서

연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초	비고
1	21.5.25	보육아동 교재구입	500,000	5,000×100권	

3.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예금주
00은행	123-04567-89	진흥원 어린이집

후 원 금 관 리 대 장

번호	종류	후원자	후원목적	후원일시	내역			지출	비고
					현금	현물	기타		
1	지정후원금	00전자	보육환경 개선	21.05.03	500,000			500,000	교재구입
2									
3									
4									
5									
6									
7									
8									
9									

15 기부금(05관) > 기부금(51항) > 비지정후원금(512목)

적용범위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산 편성

- '후원금 관리대장'에 입·출금 내역 관리하며, 현금 및 현물기부, 후원자, 용도 등 기재
-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220항), 부채상환 및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취득으로의 사용 제한
-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5 기부금	51 기부금	512 비지정후원금	- 자선행사 수익금 1,000,000원 x 1회

16 적립금(06관) > 적립금(61항) > 적립금처분수입(611목)

적용범위

- 세출 예산 '적립금(511목)'의 사용을 위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액 및 적립기간 만기도래에 따른 환급금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 등

예산 편성

- 적립금 적립액 중도인출금 또는 만기 환급금의 경우 사업 계획서 적립 목적에 따라 세출 예산 '시설비(711목), 시설장비유지비(712목), 자산취득비(721목) 등으로 지출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으로 지출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 적립금 만기 환급 10,240,000원 x 1회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통장 인출금 3,042,760원x1회

1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적립금처분수입)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6	적립금		5,842,500	0	5,842,500	
	61	적립금	5,842,500	0	5,842,500	
		611적립금 처분 수입	5,842,500	0	5,842,500	적립금 만기환급금 : 5,842,500원 합 계:5,842,500원
07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1 과년도 수 입	521,632	480,000	41,632	2021년 2월분 미납 보육료:260,000원×2명=520,000원 2월분 국민행복카드 수수료: 1,632원×1회=1,632원 합 계: 521,632원
08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1 이자수입	34,000	30,000	4,000	운영비 통장 이자 수입: 10,000원 ×2회=20,000원 세입세출외 통장 이자수입: 7,000원 ×2회=14,000원 합 계: 34,000원
		812 그 밖의 잡수입	5,796,364	10,538,580	△4,742,216	실습교사 실습비: 100,000원×2명=200,000원 차량 매각대금: 4,200,000원 안전공제회 환급금: 20,000원×1명×5회=100,000원 보육카드기금: 997,937원×1회=997,937원 21년 운영통장 적립기금: 298,427원×1회=298,427원 합 계: 5,796,364원
09	전년도 이월액		2,423,223	495,580	1,927,643	
	91	전년도 이월액	2,423,223	495,580	1,927,643	

적립금 중도 인출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경우 세입 예산 적립금 처분 수입에 예산 편성하고 적립금 사업계획서의 목적대로 세출 예산에 연계편성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진흥원 어린이집

□ 적립목적: 노후 통학 차량에 대한 차량 구입

□ 적립개요

사업종류	적립기간	총적립액	예탁기관	산출기초	비고
차량 구입	17.1~21.12	10,800,000	00은행	180,000×60개월	

□ 연도별 적립액

합계	1차연도 (2017년)	2차연도 (2018년)	3차연도 (2019년)	4차연도 (2020년)	5차연도 (2021년)	산출기초	비고
10,80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5년	

□ 적립금 사용계획

사업일시(예정)	세 출 항 목			사업내용	집행 예정액	비고
	관	항	목			
22.2	재산조성비	자산구입비	자산취득비	통학차량 구입	10,800,000	

□ 기대효과

○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사전 적립으로 향후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한 안정적 기관운영

붙임. 1. 적립 필요성 소명 자료 1부.
2. 견적서 1부

1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진흥원 어린이집

□ 적립목적: 노후 통학 차량에 대한 차량 구입

□ 적립개요

사업종류	적립기간	총적립액	예탁기관	산출기초	비고
차량 구입	17.1~21.12	10,800,000	00은행	180,000×60개월	

□ 연도별 적립액

합계	1차연도 (2017년)	2차연도 (2018년)	3차연도 (2019년)	4차연도 (2020년)	5차연도 (2021년)	산출기초	비고
10,80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	2,160,000×5년	

□ 적립금 사용계획

사업일시(예정)	세 출 항 목			사업내용	집행 예정액	비고
	관	항	목			
22.2	재산조성비	자산구입비	자산취득비	통학차량 구입	10,800,000	

□ 기대효과

○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사전 적립으로 향후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한 안정적 기관운영

붙임. 1. 적립 필요성 소명 자료 1부.
2. 견적서 1부

세출 예산서

(단위: 원)

적립금 중도 인출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경우 세입 예산 적립금 처분 수입에 예산 편성하고 적립금 사업계획서의 목적대로 세출 예산에 연계편성

과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증감	산출기초
		622 보호자 반환금	0	0	0	합 계: 0원
		623 법인회계 전출금	0	0	0	합 계: 0원
700	재산조성비		41,385,000	9,797,210	31,737,790	
	710	시설비	26,030,000	6,562,210	19,467,790	
		711 시설비	25,500,000	6,352,210	19,147,790	놀이터 공사비용(보조): 5,500,000원× 1회= 5,500,000원 보육실 실내 공사비용(장기차입):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5,500,000원
		712 시설장비 유지비	530,000	210,000	320,000	스프링클러 수리비용: 350,000원 × 1회= 350,000원 보일러 수리비용: 180,000원 × 1회= 180,000원 합 계: 530,000원
	720	자산구입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721자산취득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인덕션 구입비(보조):1,000,000원×1대= 1,000,000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보조):1,980,000원×1대= 1,980,000원 장남감 살균기 구입비(보조): 325,000원×1대= 325,000원 차량 구입비(일시납부금): 9,200,000원 차량 할부금: 200,000원 × 12회 = 2,400,000원 에어컨 구입비: 600,000원× 1대= 600,000원 합 계: 15,505,000원
800	과년도지출		0	0	0	

17 과년도수입(07관) > 과년도수입(71항) > 과년도수입(711목)

적용범위 ● 전년도에 세입 결정된 수입이 당해 연도에 입금되어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예산 편성 ● 보육료,필요경비 수납대장 및 전년도 미수납 금액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 2월분 특별활동비 미수납액 44,000원 x 1명 x 1회 - 2월분 정부지원 보육료수입 260,000원 x 2명 x 1회

18 잡수입(08관) > 잡수입(81항) > 이자수입(811목)

적용범위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예산 편성 전년도 결산 실적에 준하는 이자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 운영비 통장 예금이자 9,000원 x 2회 - 4대보험 통장 이자수입 5,000원 x 2회 - 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2,000원 x 2회

19 잡수입(08관) > 잡수입(81항) > 그 밖의 잡수입(812목)

적용범위

-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수령액(만기환급금 포함) 등

예산 편성

- 당해연도 세입 금액에 대한 계획 반영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 실습비 100,000원 x 2명 x 2회 - 차량매각 대금 20,000,000원 x 1건 x 1회 - 적립성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2,380,260원 x 1건 x 1회 - 체크카드 환급금 10,000원 x 12회 - 보육통장 카드 기금 433,875원 x 1건 x 1회

20 전년도이월액(09관) > 전년도이월액(91항) > 전년도이월금(911목)

적용범위

-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예산 편성

- 운영비 통장의 전년도 결산 잔액 및 2월말일자 잔액증명원과 일치하는 잉여금 편성

  단, 입학금의 선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2월말 통장에서 선수납분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9 전년도 이월액	09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3,365,430원 x 1회

20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금)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6	적립금		5,842,500	0	5,842,500	
	61	적립금	5,842,500	0	5,842,500	
		611적립금 처분 수입	5,842,500	0	5,842,500	적립금 만기환급금 : 5,842,500원 합 계:5,842,500원
07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1 과년도 수 입	521,632	480,000	41,632	2021년 2월분 미납 보육료:260,000원×2명=520,000원 2월분 국민행복카드 수수료: 1,632원×1회=1,632원 합 계: 521,632원
08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1 이자수입	34,000	30,000	4,000	운영비 통장 이자 수입: 10,000원 ×2회=20,000원 세입세출외 통장 이자수입: 7,000원 ×2회=14,000원 합 계: 34,000원
		812 그 밖의 잡수입	5,796,364	10,538,580	△4,742,216	실습교사 실습비: 100,000원×2명=200,000원 차량 매각대금: 4,200,000원 안전공제회 환급금: 20,000원×1명×5회=100,000원 보육카드기금: 997,937원×1회=997,937원 21년 운영통장 적립기금: 298,427원×1회=298,427원 합 계: 5,796,364원
09	전년도 이월액		2,423,223	495,580	1,927,643	
	91	전년도 이월액	2,423,223	495,580	1,927,643	
		911 전년도 이월금	2,423,223	495,580	1,927,643	전년도 이월금: 2,423,223원 합 계: 2,423,223원
		9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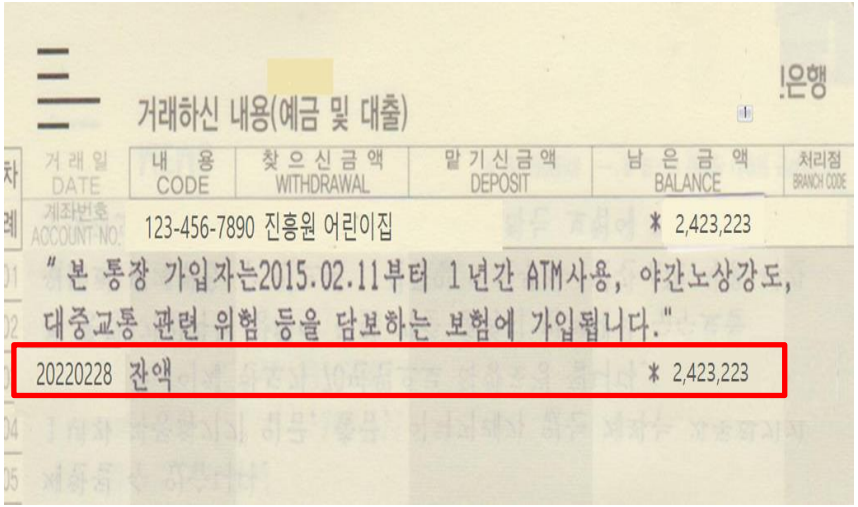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거래일 DATE	내 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 2,423,223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20228 잔액 * 2,423,223

미리 수납한 입학금이나 이외 출납마감기한 이후 지출분이 없는 경우 2월말 통장 잔액을 전액 전년도 이월금(전년도 잉여금)으로 예산 편성

21 전년도이월액(09관) > 전년도이월액(91항) > 전년도이월사업비(912목)

적용범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 사업비

예산 편성 ● 기존 감가상각비 누적 적립액 미편성 → '결산 총괄설명'에 반영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9 전년도 이월액	09 전년도 이월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 사업비

2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사업비)

적립금 만기환급금이 당해 회계연도안에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

연별시산표(월계표)

기간: 2021.03.01. ~ 2022.02.28.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정부지원보육료	52,543,147	42,688,590	48,731,061	42,476,759	54,637,000	41,365,582	48,121,540	53,212,122	56,060,936	49,387,026	43,929,373	52,259,134	585,412,270
부모부담보육료	1,524,700	1,245,000	1,200,000	3,218,080	1,940,000	2,282,100	1,523,000	1,202,800	1,968,000	2,452,000	1,122,500	1,948,000	21,626,180
특별활동비	7,253,000	5,860,000	6,862,000	6,556,000	7,458,000	7,060,000	5,974,000	5,924,000		7,253,000	6,439,000	7,420,000	74,059,000
기타필요경비	12,691,420	10,322,756	11,479,576	10,942,628	12,585,240	11,612,052	10,568,878	10,323,540	14,968,054	11,928,525	10,623,675	15,389,321	143,435,665
인건비보조금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1,674,000	1,802,510	10,476,510
기본보육료	8,078,000	8,065,540	8,078,000	8,078,000	8,078,000	8,078,000	8,017,800	7,917,000	8,000,540	7,856,000	8,923,840	8,972,000	98,142,720
공공형운영비													-
기타지원금	6,482,220	11,078,200	7,754,500	6,912,680	8,848,970	7,524,080	6,727,900	5,455,970	9,255,520	7,518,300	8,005,840	8,581,550	94,145,730
자본보조금										1,200,000			1,200,000
전입금													-
단기차입금		5,000,000					10,000,000						15,000,000
장기차입금													-
지정후원금													-
비지정후원금													-
적립금처분수입											11,636,965		11,636,965

2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사업비)

연별시산표(월계표)

기간: 2021.03.01. ~ 2022.02.28.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시설비										280,000			280,000
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867,854	867,854	867,854	867,854	867,540	867,854	867,876			54,000		466,000	6,594,686

적립금 만기환급금이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후 당해 회계연도안에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 11,636,965(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세입처리 된 만기환급금or 중도인출금액)
-466,000(사업계획서의 목적대로 사용한 금액)=11,170,965(미사용금액)
2월말 통장 잔액은 11,170,965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잔고로 나타나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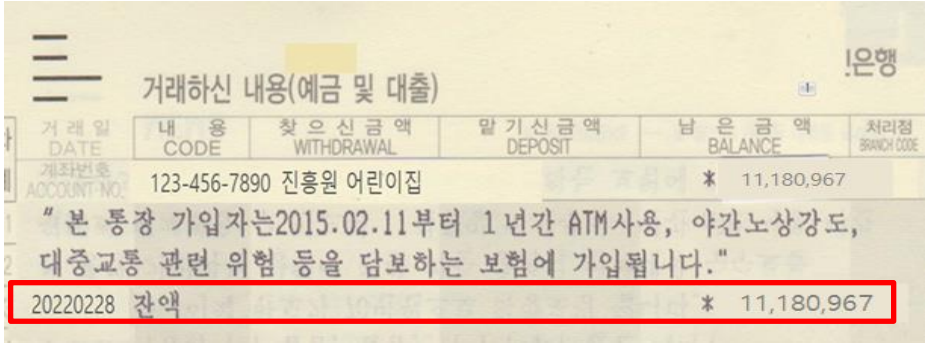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거래일 DATE	내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 11,180,967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20228 잔액 * 11,180,967

2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사업비)

세입 예산서

(단위: 원)

적립금 만기환급금이 당해 회계연도안에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후 당해 회계연도안에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 11,636,965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세입처리 된 만기환급금or중도인출금액)
-466,000(사업계획서의 목적대로 사용한 금액)=11,170,965(미사용금액)
2월말 통장 잔액 11,180,967원중 순수이월금인 10,002원은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적립금 미사용 이월금액인 11,170,965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세입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서의 목적대로 세출 예산 연계 편성

911 전년도 이월금	10,002	128,095	△118,093	전년도 이월금: 10,002원 합 계: 10,002원	
9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11,170,965	0	11,170,965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70,965원 합 계: 11,170,96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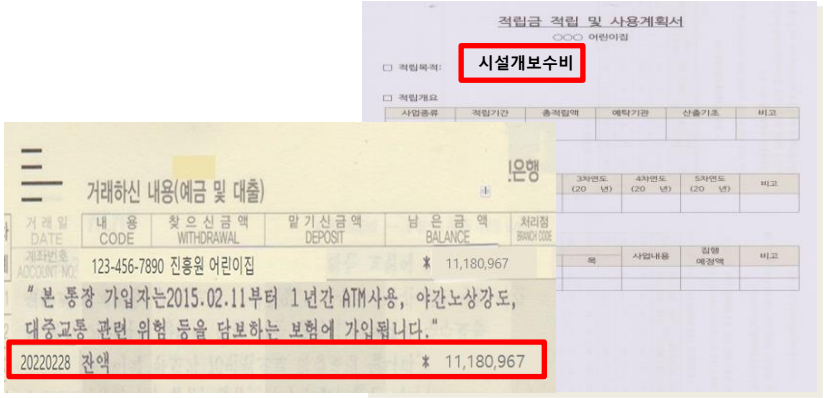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 어린이집

□ 적립목적: 시설개보수비

□ 적립개요

사업종류	적립기간	총적립액	예탁기관	산출기초	비고

3차연도 (20 년)	4차연도 (20 년)	5차연도 (20 년)	비고

목	사업내용	집행 예정액	비고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거래일 DATE	내 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 11,180,967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20228 잔액 * 11,180,967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700	재산조성비		35,392,465	14,186,000	21,206,465	
	710	시설비	23,170,965	6,900,000	16,270,965	
		711 시설비	22,670,965	5,700,000	16,970,965	놀이터 공사비용: 5,500,000원× 1회= 5,500,000 시설 공사비용: 17,170,965원 합 계: 22,670,965원

2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사업비)

현 금 출 납 부

담 당	원 장
金誠汝印	金誠汝印

연월일	적요	계정과목	증빙서 번호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3/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1	10,002		10,002
3/1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 이월사업비	2	11,170,965		11,180,967
3/2	새싹반 최00,김00,오00의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3	180,000		1,298,097
3/2	3월2일 식단 급식 재료비 (양파, 감자, 돼지고기 등)	급식·간식 재료비	4		69,800	1,228,297
⋮	⋮	⋮	⋮	⋮	⋮	⋮
월계				22,784,854	21,824,071	960,783
누계				22,784,854	21,824,071	960,783

21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전년도이월사업비)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01				金誠汝印	金誠汝印
관	전년도이월액	발의		2022.03.01	
항	전년도이월액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목	전년도이월금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금일만이원정 (₩10,002)					
적 요	전년도 이월금				
비 고	2월말 통장 잔액: 11,180,967원중 전년도이월금: 10,002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1,170,965원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02				金誠汝印	金誠汝印
관	전년도이월액	발의		2022.03.01	
항	전년도이월액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목	전년도이월사업비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금일천일백일십칠만구백육십오원정 (₩11,170,965)					
적 요	전년도 이월 사업비				
비 고	2월말 통장 잔액: 11,180,967원중 전년도이월금: 10,002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1,170,965원				

0 인건비(세출)

지급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1~12월 지급
- 재정형편에 따라 상향 지급 가능
- 운영비의 잉여금은 보수 상항, 성과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환경 개선 등 균형 있게 사용 가능
- 단, 직원 보수에 사용 시 총 잉여금의 50% 초과 할 수 없음
- 또한, 교직원 보수 및 성과급 지급 시,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 되어야 함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별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하여 원장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함.
- 단, 보수를 심하게 불리하게 책정하면 안됨
-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 (예) 9,160원 x (약)209시간 = 1,914,440원 이상 지급 필요
- 또한, 어린이집과 교직원 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지급수준 결정

0 인건비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유형에 따라 급여와 수당 구분(원장, 보육교직원, 기타인건비)**
- 보수,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근로계약서」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2년, 시간당 9,160원)**
- **급여는 개인계좌로 입금되며, 급여명세서 발급**
- **수당(112목, 122목)의 경우, 정기·수시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골고루 혜택 편성**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 특기자 또는 운전자 등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 **법정부담금(141목)의 경우 어린이집 부담 사회보험료이며**, 사회보험료율을 확인하여 급여수준에 따른 적정 보험료 납부 필요 ▶ **본인부담금은 '급여(111목, 121목)'에서 공제**
- **대표자**의 경우 급여 지급 할 수 없으나, **임용 등록되어 상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월 중간 신규임용 또는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급

1~2 인건비(100관) > 원장인건비(111항) > 원장급여, 원장수당(111~112목)

적용범위

- 원장급여: 원장 인건비 중 원장 기본급
- 원장수당: 원장 상여금, 각종 수당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당해 회계연도내에서는 호봉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사회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예산 편성

-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직위와 직무에 알맞은 수당의 명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 급여	- 기본급 5호봉(금액) x 1명 x 12월
		112 원장수당	- 명절 수당 100,000원 x 1명 x 2월

3~4 인건비(100관) >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 >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수당(121~122목)

적용범위

- 보육교직원급여: 원장을 제외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중 기본급 (보육교사, 누리보조, 조리원, 운전원 및 기타보육교직원 등)
- 보육교직원수당: 원장을 제외한 보육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급식보조비, 명절수당 및 기타수당(각 수당 내역은 구분하여 편성)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당해 회계연도내에서는 호봉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예산 편성

- 근로계약서 등 지급 계약에 따른 급여, 수당 내역을 파악하여 명칭과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
- 보육료의 높은 인상률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 수준으로 지급 권고함(22.0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737(2021.12.22)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 급여	- 주임교사 4호봉 x 1명 x **12월** - 담임교사 1호봉 x 5명 x **12월** - 조리원 2호봉 x 1명 x **12월**
		122 보육교직원 수당	- 주임수당 50,000원 x 1명 x 12월 - 명절수당 100,000원 x 7명 x 2회 - 탄력보육수당: 131,700원 x 1명 x 12월

5 인건비(100관) > 기타 인건비(130항) > 기타인건비(131목)

적용범위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기타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지급 확인서, 통장사본, 근로확인서 등 증빙

예산 편성

- 2022년 최저인건비(시간당 9,160원)이상 근로계약서 근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	- 대체교사 84,320원 x 5명 x 10회 - 대체 조리사 84,320원 x 1명 x 5회

5 인건비(100관) > 기타 인건비(130항) > 기타인건비(131목)

기타인건비 지급내역서

성명	김진흥원	연락처	(핸드폰) 010-4674-3976
주민번호	123456-0123456		(이메일) vip0207@진흥원.com
주소 (자택)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34	계좌번호	(은행명: 00) 123456-78-012345
근무일시	2019.05.06	통장사본	
지급액	₩54,000 (금오만사천원정)		
근무내용	현장학습 보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423호(2016. 7. 25.)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기준(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과 안전조치 (보관)로 관리되는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00 어린이집 기타인력 활동을 위해 본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19년 05월 06일 이름 : 김진흥원 (인)

6 인건비(100관) > 기관부담금(140항) > 법정부담금(14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여야 할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료
- 개인별 급여총액(기본급+제수당+직책급) 적용
- 사회보험 관리 시, 운영비 外 별도통장 관리 가능

예산 편성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원장(대표자겸 원장 포함), 보육교직원 대상
- 고용보험.산재보험 : 원장(월급 원장), 원장(대표자겸 원장 포함) 外 보육교직원 대상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207,184,200원 x **4.5%** - 건강보험 207,184,200원 x **3.495%** - 장기요양 207,184,200원 x **3.495%** x **12.27%** **(또는 건강보험료**x12.27%) - 고용보험 165,184,200원 x **1.05% (22.07. 1.15%인상)** - 산재보험 165,184,200원 x **0.79%** - 기타 종사자 고용보험4,572,700원 x **1.05%(22.07. 1.15%인상)** - 기타 종사자 산재보험4,572,700원 x **0.79%**

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법정부담금)

대표자겸 원장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기본급: 3,724,500원 × 12개월 = 44,694,00 합 계: 44,694,000원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원장 활동비수당:200,000원× 12개월 = 2,400,000원 명절휴가수당: 100,000원 × 3회 = 300,000원 합 계: 2,700,000원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199,840	273,266,880	10,932,960	
		121 보육 교직원급여	276,999,840	267,866,880	9,132,960	주임교사: 2,123,000원 × 1명 × 12개월 = 25,476,000원 교 사: 2,018,400원 × 5명 × 12개월 =121,104,000원 누리보조: 1,025,000원 × 1명 × 12개월 = 12,300,000원 보조교사: 1,025,000원 × 1명 × 12개월 =12,300,000원 연장반교사: 1,025,000원× 3명 × 12개월 =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조 리 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운 전 원: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합 계: 276,999,840원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주임수당: 100,000원×1명×12개월 = 1,200,000원 아동인권선임수당:50,000원×1명×12개월 = 600,000원 건강관리수당:100,000원 ×6명× 1회 =600,000원 자기계발비수당:100,000원 ×6명×1회 =600,000원 명절·휴가비: 100,000원 ×14명 ×3회 = 4,200,000원 합 계: 7,200,000원

44,694,000+2,700,000+276,999,840+7,200,000+3,360,000=334,953,840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기준 금액(대표자겸원장 포함)

276,999,840+7,200,000=284,199,840
고용,산재보험의 기준 금액(대표자겸 원장 미포함)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22 직책급	3,360,000	3,000,000	360,000	280,000원 × 12월 = 3,360,000원 합 계: 3,360,000원
		223 회의비	620,000	520,000	100,000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원×4회 = 200,000원 부모회의: 30,000원×2회 = 60,000원 교사회의: 30,000원×12회 = 360,000원 합 계: 620,000원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2,990,000	2,590,000	4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7명 ×2회 =1,68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보조): 80,000원×2명 = 160,000원 승급교육(보조): 70,000원×2명 = 7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2,99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3,697,200	1,500,000	영아반 교재 교구 구입비: 7,000원 ×15명×12월 =1,260,000원 유아반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 8,000원×55명×12월=5,280,000원 누리반 교재. 교구 구입비(누리지원금): 38,420원×55명×12월=25,357,200원 누리반교재교구제작비용: 50,000원×3개반×12월=1,800,000원 교재교구비(보조): 800,000원 도서관 동화책(도서 구입 후원금 지출분): 10,000원×70권=700,000원 합 계: 35,197,200원

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법정부담금)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30	기타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131 기 타 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대체교사(보조포함): 84,320원×1명×15회 = 1,264,800원 대체조리사(보조): 84,320원 ×3명×2회 = 421,600원 합 계: 1,686,400원
	140	기관부담금	59,177,994	54,343,360	4,834,634	
		141 법 정 부담금	33,476,274	31,566,120	1,910,154	국민연금: 334,953,840원×4.5% = 15,072,923원 건강보험: 334,953,840원×3.495% = 11,706,637원 장기요양보험: 11,706,637 ×12.27% = 1,436,405원 고용보험: 284,199,840원×1.05% = 2,984,099원 산재보험: 284,199,840원×0.79% = 2,245,179원 기타종사자 고용보험:1,686,400원×1.05% = 17,708원 기타종사자 산재보험:1,686,400원×0.79% = 13,323원 합 계: 33,476,274원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5,701,720	22,772,240	2,924,480	퇴직 적립금: 284,199,840원 × 1/12 = 23,683,320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68,200원× 12개월 = 2,018,400원 합 계: 25,701,720원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공기청정기 렌탈((보조포함): 24,900원 × 12회 = 298,800원 인쇄(소봉투) 비용: 50,000원×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10,000원× 12회 = 120,000원 정화조 청소비용: 84,000원× 1회 = 84,000원 제증명 수수료: 1,000원× 12회 = 12,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44,694,000+2,700,000+276,999,840+7,200,000+3,360,000=334,953,840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기준 금액(대표자겸원장 포함)

276,999,840+7,200,000=284,199,840
고용산재보험의 기준 금액(대표자겸 원장 미포함)

						합 계: 1,686,400원
	140	기관부담금	59,177,994	54,343,360	4,834,634	
		141 법 정 부담금	33,476,274	31,566,120	1,910,154	국민연금: 334,953,840원×4.5% = 15,072,923원 건강보험: 334,953,840원×3.495% = 11,706,637원 장기요양보험: 11,706,637 ×12.27% = 1,436,405원 고용보험: 284,199,840원×1.05% = 2,984,099원 산재보험: 284,199,840원×0.79% = 2,245,179원 기타종사자 고용보험:1,686,400원×1.05% = 17,708원 기타종사자 산재보험:1,686,400원×0.79% = 13,323원 합 계: 33,476,274원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5,701,720	22,772,240	2,924,480	퇴직 적립금: 284,199,840원 × 1/12 = 23,683,320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68,200원× 12개월 = 2,018,400원 합 계: 25,701,720원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공기청정기 렌탈((보조포함): 24,900원 × 12회 = 298,800원 인쇄(소봉투) 비용: 50,000원×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10,000원× 12회 = 120,000원 정화조 청소비용: 84,000원× 1회 = 84,000원 제증명 수수료: 1,000원× 12회 = 12,000원

7 인건비(100관) > 기관부담금(140항)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

적용범위

-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5월 31일까지) 시 퇴직금적립 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첨부
- 보육교직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예산 편성

- 모든 보육교직원(기타인건비, 대표자겸 보육교직원 제외) 대상
- 산출근거 :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 / 12개월

  고용원장의 경우 원장인건비(110항)+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직책급(222목) 포함 산정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40 기관 부담금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 284,199,840원 × 1/12 - 퇴직교사 퇴직금 지급 3,042,760원×1명 - 육아휴직(유급)자 퇴직금 적립 2,095,800원× 1/12

7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대표자겸 원장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199,840	273,266,880	10,932,960	
		121 보육 교직원급여	276,999,840	267,866,880	9,132,960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30	기타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131 기 타 인건비	1,686,400	166,280	1,520,120	대체교사(보조포함): 84,320원×1명×15회 = 1,264,800원 대체조리사(보조): 84,320원 ×3명×2회 = 421,600원 합 계: 1,686,400원
						산재보험: 284,199,840원×0.79% = 2,245,179원 기타종사자 고용보험:1,686,400원×1.05% = 17,708원 기타종사자 산재보험:1,686,400원×0.79% = 13,323원 합 계: 33,476,274원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5,701,720	22,772,240	2,924,480	퇴직 적립금: 284,199,840원 × 1/12 = 23,683,320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68,200원× 12개월 = 2,018,400원 합 계: 25,701,720원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공기청정기 렌탈((보조포함): 24,900원 × 12회 = 298,800원 인쇄(소봉투) 비용: 50,000원×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10,000원× 12회 = 120,000원 정화조 청소비용: 84,000원× 1회 = 84,000원 제증명 수수료: 1,000원× 12회 = 12,000원

276,999,840+7,200,000=284,199,840
퇴직적립금 기준금액(대표자겸 원장 미포함)
육아휴직자 퇴직금 추가 편성

7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고용원장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199,840	273,266,880	10,932,960	
		121 보육 교직원급여	276,999,840	267,866,880	9,132,960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44,694,000+2,700,000+276,999,840+7,200,000+3,360,000=334,953,840
퇴직적립금 기준 금액(고용원장 퇴직금 적립)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추진비				직원경조사비: 50,000원 ×3회 = 150,000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20,000원 ×5회 = 100,000원 보육교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 250,000원 × 4회 = 1,000,000원 **합 계: 1,300,000원**
		222 직책급	3,360,000	3,000,000	360,000	280,000원 × 12월 = 3,360,000원 **합 계: 3,360,000원**
		223 회의비	620,000	520,000	100,000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원×4회 = 200,000원 부모회의: 30,000원×2회 = 60,000원 교사회의: 30,000원×12회 = 360,000원 **합 계: 620,000원**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2,990,000	2,590,000	4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7명 ×2회 =1,68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보조): 80,000원×2명 = 160,000원 승급교육(보조): 70,000원×2명 = 7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2,99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3,697,200	1,500,000	

7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고용원장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199,840	273,266,880	10,932,960	
		121 보육 교직원급여	276,999,840	267,866,880	9,132,960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20 업무추진비		5,280,000	4,620,000	660,000	
		221 업무 추진비	1,300,000	1,100,000	200,000	종(시)무식: 50,000원 ×1회 = 50,000원 직원경조사비: 50,000원 ×3회 = 150,000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20,000원 ×5회 = 100,000원 보육교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 250,000원 × 4회 = 1,000,000원 합 계 1,300,000원
		222 직책급	3,360,000	3,000,000	360,000	280,000원 × 12월 = 3,360,000원 합 계 3,360,000원
		223 회의비	620,000	520,000	100,000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원×4회 = 200,000원 부모회의: 30,000원×2회 = 60,000원 교사회의: 30,000원×12회 = 360,000원 합 계 620,000원
300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0 기 본 보육활동비		106,999,200	100,425,970	6,573,230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2,990,000	2,590,000	400,000	교직원 연수비: 120,000원 ×7명 ×2회 =1,680,000원 위생관리 조리사 교육: 80,000원×1회 = 80,000원 보수교육(보조): 80,000원×2명 = 160,000원 승급교육(보조): 70,000원×2명 = 70,000원 교직원 해외 연수비: 1,000,000원×1명 = 1,000,000원 합 계 2,990,000원
		312 교재교구 구입비	35,197,200	33,697,200	1,500,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4,694,000+2,700,000+276,999,840+7,200,000+3,360,000=334,953,840 퇴직적립금 기준 금액(고용원장 퇴직금 적립) 육아휴직자 퇴직금 추가 편성						
	140 기관부담금		63,407,494	54,343,360	9,064,134	
		141 법 정 부담금	33,476,274	31,566,120	1,910,154	국민연금: 334,953,840원×4.5% = 15,072,923원 건강보험: 334,953,840원×3.495% = 11,706,637원 장기요양보험: 11,706,637 ×12.27% = 1,436,405원 고용보험: 284,199,840원×1.05% = 2,984,099원 산재보험: 284,199,840원×0.79% = 2,245,179원 기타종사자 고용보험:1,686,400원×1.05% = 17,708원 기타종사자 산재보험:1,686,400원×0.79% = 13,323원 합 계: 33,476,274원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9,931,220	22,772,240	7,158,980	퇴직 적립금: 334,953,840원 × 1/12 = 27,912,820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68,200원× 12개월 = 2,018,400원 합 계: 29,931,220원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공기청정기 렌탈(보조포함): 24,900원 × 12회 = 298,800원 인쇄(소봉투) 비용: 50,000원×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10,000원× 12회 = 120,000원 정화조 청소비용: 84,000원× 1회 = 84,000원 제증명 수수료: 1,000원× 12회 = 12,000원 놀이터 점검 수수료: 88,000원× 1회 = 88,000원 살균 소독수 구입비: 19,000원× 6회 = 114,000원

8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수용비 및 수수료(211목)

적용범위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구급약품, 치료비, 각종 사무용품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대관·비품 대여료, 공고료,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도서 구입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
- 협회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이며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예산 편성

- 전년도 총계정원장을 활용하여 고정 지출 항목과 평균 지출금액 파악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 도서구입, 렌탈비, 소규모 수선비, - 약품구입, 잡화류, 치료비, 소독비, 협회비 - 수수료, 우편료, 광고료 등

8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00	운영비		37,339,200	35,643,520	1,695,680	
	210	관리운영비	32,059,200	31,023,520	1,035,680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913,200	12,759,200	154,000	소독비용: 30,000원 × 12회 = 360,000원 00연합회 비용: 150,000원× 1회 = 150,000원 00장부 수수료: 20,000원× 12회 = 240,000원 프린터 렌탈 사용료: 30,000원× 12회 = 360,000원 공기청정기 렌탈요금(보조): 11,000원× 12회 = 132,000원 놀이터 점검 수수료: 88,000원× 1회 = 88,000원 살균 소독수 구입비: 19,000원× 6회 = 114,000원 식기세척 세제 구입비:40,000× 3회 = 120,000원 공인증 발급 수수료: 4,400원× 1회 = 4,400원 배송비: 3,000원× 10회 = 30,000원 가정 키트 배송료: 3,000원× 70명×2회 = 420,000원 zoom 사용 수수료: 20,000원× 12회 = 240,000원 주방용품 구입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전자출결시스템 유지 관리비: 38,500원× 12월=462,000원 전기안전점검: 50,000원 × 1회 = 50,000원 퇴직연금 수수료: 6,000원 × 12회 = 72,000원 평가인증 수수료: 300,000원 × 1회 = 300,000원 월간 도서 구입비: 50,000원× 12회 = 600,000원 인쇄비: 150,000원 × 1회 = 150,000원 현수막 구입비: 234,000원 × 1회 = 234,000원 리플렛: 150,000원 × 1회 = 150,000원 문구류: 60,000원 × 12회 = 720,000원 사무용품구입비: 50,000원 × 12회 =600,000원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비: 60,000원 × 1회 = 60,000원 한국 어린이집 연합회비: 80,000원 × 1회 = 80,000원 40,000원 000원 4,000원 소독비용: 20,000원 × 12월 = 240,000원 아동 치료비: 35,000원 × 12회 = 420,000원

고정 지출 비용 파악하여 예산 선반영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수용비및수수료

연월일	적요	증빙서 번호	예산	수입	지출	차인잔액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액)		8,644,000			
10/2	10월분 00 연합회비	5423			150,000	3,484,260
10/5	가을 운동회 현수막 구입비	5524			200,000	3,284,260
10/8	볼펜외 9종 구입비	5648			48,260	3,236,000
10/9	10월분 소독 비용	5652			30,000	3,206,000
10/13	10월분 장부 수수료	5879			20,000	3,186,000
10/17	공공형 리플렛 제작 비용	5947			350,000	2,836,000
10/21	10월분 프린터 렌탈 사용요금	6012			30,000	2,806,000
·	·	·	·	·	·	·
·	·	·	·	·	·	·
월계				0	940,820	
누계			8,644,000	0	5,950,560	2,693,440

9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212목)

적용범위

- **세금 및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자동차세, 보험료, 안전공제회비 및 통신비 등**

※ 보험료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바, 보험가입의 1)~3) 보험에 한해 지출 가능

- 보험료 전액(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보험료 포함)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결산 시 참고 서식(적립보험료 결산보고)에 따라 적립보험료 적립액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만기환급금 수령시 반드시 시설회계에(그 밖의 잡수입)로 세입 처리 해야 함
-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1대에 한하여 이용료 지원**
- **어린이집 회계에서 이용료를 지출하는 핸드폰은 기기를 구매(자부담)하여 월이용료만 납부 하도록 함**

※ 자산취득비(721목)로 핸드폰 구매시,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함

※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 불가

9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212목)

예산 편성

- 전년도 결산 대비 2~3% 물가 인상률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전년도 총계정원장을 참고하여 평균 지출 금액 파악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세금 및 공과금(전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 안전공제회비, 도시가스요금, 통학차량자동차세, 통학차량 보험료 등

9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734,000	8,559,320	174,680	전기요금 (동절기): 200,000원 × 8월 = 1,600,000원 (하절기): 320,000원 × 4월 = 1,280,000원 도시가스비(동절기): 280,000원 × 4월 = 1,120,000원 (하절기): 80,000원 × 8월 = 640,000원 핸드폰 요금: 35,000원 × 12월 = 42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80,000원 × 1회 = 180,000원 안전공제회비: 850,000원 × 1회 = 850,000원 전화요금: 50,000원 × 12월 = 600,000원 인터넷 요금: 22,000원 × 12월 = 264,000원 통학차량 세금: 140,000원 × 2회 = 280,000원 통학차량 보험료: 600,000원 × 1회 = 600,000원 상하수도 요금: 150,000원 ×6월 = 900,000원 **합 계: 8,734,000원**
		213 연료비	0	0	0	
		214 여비	380,000	250,000	130,000	관내 출장 여비: 5,000원×5회×12월= 180,000원 관외 출장여비: 50,000원 × 4회 = 200,000원 **합 계: 380,000원**
		215 차량비	3,300,000	2,700,000	600,000	차량 수리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차량 유류대(보조): 20,000원 × 12회 = 2,400,000원 차량 소모품 구입비: 150,000원 × 4회 = 600,000원 **합 계: 3,300,000원**
		216 복리후생비	4,572,000	4,835,000	△263,000	교직원 건강검진비: 30,000원 × 15명= 450,000원 교직원 피복비: 100,000원 × 15명 = 1,500,000원 병원 치료비: 10,000원 ×15명 = 150,000원 급량비: 8,000원 × 7명 ×12회 =672,000원 교직원간식비: 10,000원×15명×12회 =1,800,000원 **합 계: 4,572,000원**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80,000,000원× 2.7% =2,160,000원 **합 계: 2,160,000원**

전년도 결산 실적의 2~3% 물가인상률 반영

세 출 결 산 서

(단위: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고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인건비	111	원장급여	40,542,000	40,542,000	40,542,000	0	
				112	원장수당	2,700,000	2,700,000	2,700,000	0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289,397,520	289,397,520	289,160,300	237,220	
				122	보육교직원수당	6,200,000	6,200,000	6,200,000	0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	1,247,100	1,247,100	1,163,960	83,140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33,927,590	33,927,590	33,726,790	200,800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4,633,130	24,633,130	24,632,350	780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1	수용비및수수료	14,644,000	14,644,000	14,597,490	46,510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450,000	8,450,000	8,438,790	11,210	
				213	연료비	0	0	0	0	
				214	여비	600,000	600,000	580,000	20,000	
				215	차량비	3,600,000	3,600,000	3,590,000	10,000	
				216	복리후생비	4,654,000	4,654,000	4,590,000	64,000	
				217	기타운영비	2,700,000	2,700,000	2,684,396	15,604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700,000	700,000	689,250	10,750	
				222	직책급	3,360,000	3,360,000	3,360,000	0	

10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연료비(213목)

적용범위

- 보일러 및 난방시설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LPG) 등

예산 편성

-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3 연료비	- 보일러(등유) 연료비 250,000원 x 6월 - LPG 사용요금 50,000원 x 12월

11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여비(214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국내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 지출 할 수 없음
  (국외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이전비, 가족 여비로는 지출 할 수 없음

예산 편성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자체(시·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사항을 준용함 ※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차량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이 경우 출장 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4 여비	- 관내출장 5,000원 x 10회 x 3명 - 관외출장 50,000원 x 2회 x 3명

11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여비(214목)

여비지급기준 참고

구 분		대중교통·자차 이용 시	어린이집 차량이용 시	비 고
관내	4시간 미만	10,000원	0원	
	4시간 이상	20,000원	10,000원	
관외	일 비(현지경비)	20,000원	10,000원	
	식 비	20,000원	좌 동	
	숙박비	50,000원 이내	좌 동	
	교통비	실비	0원	버스: 일반 우등 기차: KTX일반석 항공: 이코노미석

12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차량비(215목)

적용범위

-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로 지출 '기타필요경비'의 차량운행비와 구분처리

예산 편성

- 그 밖의 지원금내 차량 지원금과 연계편성
- 기타필요경비 차량비 수납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차량 운영비 지출금
- 원장, 보육교직원 등의 개인용 차량유지비로는 지출 불가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5 차량비	- 통학차량 유류비 300,000원 x 12월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200,000원 x 4월

13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복리후생비(216목)

적용범위

- 보육교직원의 건강 검진비, 급량비, 치료비, 보육교직원 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편성

- 복리후생비와 제수당의 성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는 현물 및 서비스의 개념으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6 복리후생비	- 교직원 치료비 100,000원 x 4명 x 1회 - 교직원 급량비 50,000원 x 12월 - 교직원 피복비 40,000원 x 10명

14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기타운영비(217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상기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 경비를 말함
- 건물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 할 수 있음
- 건물임대료는 주변의 평균 임대료 이하가 되도록 노력
-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설치·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대표자 변경(인가)시에는 최초 설치·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 건물 융자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건물 융자금 대출 은행을 변경한 경우, 설치·인가 시 발생한 융자금으로서 대출 은행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 규모에 한하며, 동 규모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시설회계로 지출 불가
-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 ※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

14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기타운영비(217목)

적용범위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준칙 상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를 합산한 금액이며, 기관보육료 등 운영보조금(32항)은 포함되지 않음

(17.3.1 시행된 건물융자금 이자 지급 규정의 적용례)

1. '17.3.1 이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7.2.28 이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종전('17.2.28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지출 가능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령, 조례·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운영·보존·관리·안전 등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③ 어린이집 운영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시설을 자가 전환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임대료 지출 월 평균액보다 건물융자금 이자 월 지출액이 적은 경우

14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기타운영비(217목)

예산 편성

- **(자가) 설치·인가시 건물 융자금의 이자 지출, (임대) 건물임대료 지출**

  단, 융자금의 이자와 임대료 동시 지출하는 경우 지출의 목적 확인 필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 **총 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 예산 편성 확인**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7 기타운영비	- 설치·인가시 건물 융자금 이자 80,000,000원 x 2.7%

15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업무추진비(22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관한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 행사비에 지출

예산 편성

- 별도 지자체 규정(연간 한도액, 상한액 등) 확인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 불우이웃돕기: 100,000원 x 1회 - 교직원 경조사 100,000원 x 6회 - 유관기관 50,000원 x 4회

16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직책급(222목)

적용범위

-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제수당과 구분)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직책급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직책급 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음
  ※직책급은 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예산 편성

- 지자체 상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 편성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 원장 직책급 300,000원 x 12월

17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회의비(223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제경비**
- **회의비 지출 시, 목적, 일시, 대상 등 증빙서류 기재, 사용용도 명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현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 단,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17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회의비(223목)

예산 편성

-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가 분기별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추진비	223 회의비	• 운영위원회 100,000원 x 4회 • 학부모회의 50,000원 x 2회 • 교사회의 50,000원 x 6회

18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교직원연수 · 연구비(311목)

적용범위

-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연수·연구비
- 개인 학위 취득과정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 [인정조건]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계약학과" 관련 규정 준수
-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 인정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18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교직원연수 · 연구비(311목)

예산 편성 ● 보육교직원의 연수나 연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경비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연구비	- 교직원 연구비 100,000원 x 4명 x 1회 - 교직원 연수비 300,000원 x 4명 x 1회

19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교재 · 교구비(312목)

적용범위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교재·교구 구입비는 '특별활동비 지출(411목)'로 회계처리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예산 편성

- 누리과정 지원금을 누리반 교재교구비로 정산시 일반교재· 교구비와 누리과정 교재·교구비를 구분하여 편성
- 당해연도 지자체 지원금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보육 활동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 교재교구비 7,000원 x 70명 x12회 • **교재교구 지원금에 따른 교구 구입비 800,000원 x 1회** • 누리교재비 40,000원 x 55명 x 12월 • 장애통합반 교재교구 구입비 21,000원x 12월

20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행사비(313목)

적용범위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보육과정과 직접관련되는 경우 부모 관련 행사도 지출 가능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 기타필요경비 內 '행사비'와 구분하여 편성·집행

예산 편성

- 연간 행사 계획안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보육 활동비	313 행사비	• OT 500,000원 x 1회 • 체육대회 1,500,000원 x 1회 • 명절행사 10,000원 x 70명 • 어버이날 행사 8,000원 x 70명

21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영유아복리비(314목)

적용범위

- 영유아 건강·안전 관련 비용(건강검진, 심리검사, 발달검사 등)

예산 편성

- 연간 영·유아 복리에 대한 계획을 예산 반영하여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보육 활동비	314 영유아 복리비	• 영유아 건강 검진비용 10,000원 x 70명 x 1회

22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급식 · 간식재료비(315목)

적용범위

-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아동 1인당 적정 수준(1,900원)이상으로 편성·지출하여야 함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 집행 노력)
- 급식은 어린이집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급식은 직접 조리하여 공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다만, 현장 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동의를 거칠때에는 직접 조리 제공하지 않아도 됨.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
-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 때에는 외부음식 제공 가능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22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급식 · 간식재료비(315목)

예산 편성

- 시설의 보육일수(휴일보육 여부)를 확인하여 산출기초 편성
  - ▶ (휴일보육X) 22년 249일, (휴일보육O) 22년 299일
-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 시, 지원금액을 포함한 단가로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보육 활동비	315 급식·간식 재료비	- 영아급식 2,500원 x 15명 x 21일 x 12월 - 유아급식 3,000원 x 55명 x 21일 x 12월 - 교사급식 3,000원 x 7명 x 21일 x 12월

23 수익자부담경비(400관) > 선택적보육활동비(410항) > 특별활동비지출(315목)

적용범위

-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예산 편성

- 세입예산서에서 작성한 '특별활동비(211목)'과 <u>연계편성</u>
- 수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운영비 지출분의 경우 해당 계정과목으로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 과학 30,000원 × 55명 × 12월 • 체육 30,000원 × 55명 × 12월

2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특별활동비지출)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10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위탁보육비용(전입금) 예산 미편성시 100% 연계편성

2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특별활동비지출)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8,352			
		411 전입금	3,360,000	0	3,360,000	140,000×2명×12개월=3,360,000 합 계: 3,360,000원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12,000원×40명×12월=5,760,000원 연장반아동 석식대:30,000원×23명 ×12월=8,28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30,000원× 5명×12월=1,800,000원 합 계: 35,152,000원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0,000원 2월=7,800,000원 행 사 비: 5,000원×65명×12월=3,9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0명×12월=5,760,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280,000원

전입금으로 편성된 직장보육시설 위탁보육 아동 인원수 필요경비 세입 예산 감액 편성

2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특별활동비지출)

연계편성 예외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전년도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자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280,000원
		411 전입금	3,360,000	0	3,360,000	140,000×2명×12개월=3,360,000 합 계: 3,36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전년도			산출기초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1 기 타 필요경비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전입금으로 수입된 위탁보육비용의 지출시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하되 지출 결의서상 전입금의 지출분으로 부기작성토록 함 (연계편성 예외)

24 수익자부담경비(400관) > 기타필요경비(420항) > 기타필요경비지출(421목)

적용범위

-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실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으로 관리, 업체로 부모 직접 비용지불 제한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 할 수 있음
- 입학준비금(피복구입비):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학습비,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차량운행비: 보호자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24 수익자부담경비(400관) > 기타필요경비(420항) > 기타필요경비지출(421목)

-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그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24 수익자부담경비(400관) > 기타필요경비(420항) > 기타필요경비지출(421목)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세입예산서에서 작성한 '기타필요경비(221목)'과 연계편성
- 기타필요경비의 14%를 관리운영비로 미리 전용하여 세출예산 편성 제한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21 기타필요 경비지출	• 입학준비금 100,000원 × 15명 × 1회 • 현장학습비 20,000원 × 67명 × 12회 • 행 사 비 10,000원 × 67명 × 2회 • 차량운행비 20,000원 × 40명 × 12월 • 야간연장석식 30,000원 × 5명 × 12월 • 지자체 특성화비용 30,000원 × 62명 × 12월

2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지출)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 활동비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선택적 활동비지출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야간연장아동 석식대: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위탁보육비용(전입금) 예산 미편성시 100% 연계편성

2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지출)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8,352			
		411 전입금	3,360,000	0	3,360,000	140,000×2명×12개월=3,360,000 합 계: 3,360,000원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5,152,000	800,000	34,352,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차 량 비: 12,000원×40명×12월=5,760,000원 연장반아동 성심대:30,000원×23명 ×12월=8,280,000원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5명×12월=7,800,000원 행 사 비: 5,000원×65명×12월=3,9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0명×12월=5,760,000원 차 량 비: 20,000원×40명×12월=9,600,000원 ×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280,000원

전입금으로 편성된 직장보육시설 위탁보육 아동 인원수 필요경비 세입 예산 감액 편성

2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기타필요경비지출)

연계편성 예외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2	수익자부담수입		43,000,000	26,872,000	16,128,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211 특 별 활동비	12,720,000	0	12,72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3명×12월=4,452,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3명×12월=3,816,000원 합 계: 12,72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221 기 타 필요경비	30,280,000	26,872,000	3,408,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 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 10,000원×65명×12월=7,800,000원 행 사 비: 5,000원×65명×12월=3,90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0명×12월=5,76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4,032,000	26,872,000	17,160,000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411 특별 활동비지출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합 계: 13,200,000원
	420	기타필요경비	30,832,000	26,872,000	3,960,000	
		421 기타 필요경비지출	30,832,000	26,872,000	3,960,000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100,000원×8명=800,000원 입학준비금:100,000원× 5명=500,000원 현장학습비:10,000원×67명×12월=8,040,000원 행 사 비: 5,000원×67명×12월=4,020,000원 지자체특성화비용: 8,000원×62명×12월=5,952,000원 ,000원×40명×12월=9,600,000원 2,000원×16일×5명×12월=1,920,000원 합 계: 30,832,000원

전입금으로 수입된 위탁보육비용의 지출시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하되 지출 결의서상 전입금의 지출분으로 부기작성토록 함(연계편성 예외)

25 적립금(500관) > 적립금(510항) > 적립금(511목)

적용범위

-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계획수립→별도통장 적립)

  ※ 토지·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을 위한 용도로 적립 불가

- 지자체에 적립계획 사전보고(적립계획에 변경 있을 시 즉시 보고)
- 총 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에서 지출

  ※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

- 결산 시, 잔액증명서 등 서류 첨부하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기재
- '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인출 가능, 원금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보험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에 한함)

25 적립금(500관) > 적립금(510항) > 적립금(511목)

적용범위

- '17.2.28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적립금으로 1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정한 납입기한까지, 해당 보험상품의 계속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적립금의 적립을 허용. 납입기간의 연장, 납입 금액의 증액 그 밖의 보험계약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단,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 가능

예산 편성

- 총 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 예산 편성 확인

※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 적립금 300,000원 x 12월

25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적립금)

출처: 경기도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어린이집

☐ 적립목적 :

☐ 적립 개요

(단위 : 천원)

사업종류	적립기간	총 적립금액	예탁기관	산 출 기 초	비고

※ 사업종류 : 시설개보수, 차량구입 등

☐ 연도별 적립액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비 고

※ 각 연도는 당해연도 3월~ 익년도 2월까지임

☐ 적립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일시 (예정)	세 출 항 목			사 업 내 용	집행예정액	비고
	관	항	목			

☐ 기대 효과

○

○

붙임 1. 적립 필요성 소명자료 1부.
2. 견적서 1부.

적립금 적립현황

○○○어린이집

○ 예탁기관 및 계좌번호 :

○ 적립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종류	최초 적립일자	적립기간	前 회계연도까지 적립액(A)	당 회계연도 적립액(B)	인출액 (C)	누적적립액 (D=A+B-C)
	합 계						
			20 . . ~ 20 . . (년)				
			20 . . ~ 20 . . (년)				

※ 사업종류는 시설개보수, 차량구입 등 당초 적립목적 기재

붙임 적립금 잔액증명서 1부.

25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적립금]

출처: 경기도

적립금(장기차입금) 집행 결과보고

○○○어린이집

□ 사 업 명 :

□ 집행내역

(단위 : 원)

적립금액 (차입금액) (A)	집행내역				잔액 (C=A-B)	비 고
	계약일	계약업체	집행일	집행금액 (B)		

□ 관련사진

(전)	(중)	(후)

붙임 세금계산서 1부.

적립금(장기차입금 상환) 관리대장

○○○어린이집

□ 총 괄

(단위 : 천원)

사업명	적립기간 (상환기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최초 적립일 (차입일)	비 고
	20 . . . ~ 20 . . . (년)		20 . . .	

□ 적립(상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일자	금회 적립액(상환액)			적립액(상환액) 누계			결재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담당	원장

※ 적립금은 원금만 기재하되, 1년단위로 이자액 기재

26 상환 · 반환금(600관) > 차입금상환(610항) > 단기차입금 상환(61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 당해연도 상환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 지자체 사전승인으로 1회계연도에 한하여 상환연장 가능

예산 편성

- 세입 '단기차입금(421목)'의 금액과 세출 '단기차입금상환(611목)' 연계편성 및 연계상환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 차입금상환	• K은행 단기 차입금상환 3,000,000원 x 1회

2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단기차입금상환)

추경 1차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4	전입금		22,000,000	0	22,000,000	
	41	전입금	0	0	0	
		411 전입금	0	0	0	합 계: 0원
	42	차입금	22,000,000	0	22,000,000	
		421 단기 차입금	2,000,000	0	2,000,000	단기차입금: 2,000,000×1회=2,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422 장기 차입금	20,000,000	0	20,000,000	장기 차입금: 20,000,000원×1회=20,000,000원 합 계: 20,000,000원
05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	기부금	1,700,000	0	1,700,000	
		511 지정 후원금	700,000	0	700,000	도서 후원금: 10,000원×70명=700,000원 합 계: 700,000원

1차 추경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500	적립금		0	0	0	
	510	적립금	0	0	0	
		511 적립금	0	0	0	합 계: 0원
600	상환. 반환금		4,584,000	0	4,584,000	
	610	차입금 상환	4,584,000	0	4,584,000	
		611 단기 차입금 상환	2,000,000	0	2,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2,000,000원 합 계: 2,000,000원
		612 장기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장기차입 이자: 20,000,000원 ×2.9%= 580,000원 장기차입 원금 상환: 334,000원 ×6개월= 2,004,000원 합 계: 2,584,000원

27 상환 · 반환금(600관) > 차입금상환(610항) > 장기차입금 상환(612목)

적용범위

-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상환
- 적립금과 동시에 장기차입금 상환은 불가 → 단, 지출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 허용
- (상환기간) 거치기간 제외하여 5년(회계서류 보존기한)이내

  ※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가능(관련 증빙서류 보존)
- 지자체 승인으로 정책융자금 받은 시설은 '17. 3월 이전이라도 융자금 원금/이자상환 가능

  (단, 토지매입 등 실질적인 개인 자산 투자 부분은 제외

예산 편성

- 세입 '장기차입금(422목)'의 금액과 당해 상환금액을 <u>연계편성 및 연계상환</u>
- 총 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 예산 편성 확인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상환	611 장기 차입금상환	- K은행 장기차입금상환 250,418원 x 12회

27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장기차입금상환]

출처: 경기도

장기차입 및 상환계획서,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적립 현황, 관리대장, 적립금 집행결과 등은 다음 서식을 준용 요망

장기차입 및 상환계획서

○○○어린이집

☐ 차입목적 :

☐ 차입개요

(단위 : 천원)

차입일시	금융기관	차입금액	산 출 기 초	연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비고
					( )	

※ 장기차입금은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대표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액을 포함하여 50% 이내, 차입금액은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제한

☐ 장기차입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일시 (예정)	세 출 항 목			사 업 내 용	집행예정액	비고
	관	항	목			

☐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합계	원금	이자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연도별 장기차입금 상환금(612목) + 기타운영비(217목) + 적립금(511목) + 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계금액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장기차입 필요성 소명자료 1부.
2. 견적서 1부.

적립금(장기차입금 상환) 관리대장

○○○어린이집

☐ 총 괄

(단위 : 천원)

사업명	적립기간 (상환기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최초 적립일 (차입일)	비 고
	20 . . . - 20 . . . (년)		20 . . .	

☐ 적립(상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일자	금회 적립액(상환액)			적립액(상환액) 누계			결재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담당	원장

※ 적립금은 원금만 기재하되, 1년단위로 이자액 기재

27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장기차입금상환)

출처: 경기도

적립금(장기차입금) 집행 결과보고

○○○어린이집

□ 사 업 명 :

□ 집행내역

(단위 : 원)

적립금액 (차입금액) (A)	집행내역				잔액 (C=A-B)	비 고
	계약일	계약업체	집행일	집행금액 (B)		

□ 관련사진

(전)	(중)	(후)

붙임 세금계산서 1부.

28~30 상환 · 반환금(600관) > 반환금(620항) > 보조금반환금,보호자반환금,법인회계전출금(621~623목)

적용범위

-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 보호자 반환금: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 또는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 법인회계 전출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

예산 편성

- 전년도 결산상 반환금, 현년도 반환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반환금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 정부보조금 반환 350,000원 x 1회
		622 보호자 반환금	- 보호자 반환 9,000원 x 55명
		623 법인회계 전출금	- 법인회계 전출금

28~30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보조금반환금,보호자반환금,법인회계전출금)

세 출 결 산 서

(단위:원)

세 입 결 산 서

(단위:원)

과목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300,348,000	300,208,240	139,760	
				112	부모부담 보육료	7,920,000	7,920,000	0	
02	수익자 부담금 수 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12,324,000	12,324,000	0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7,744,880	7,613,590	131,290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96,421,500	96,338,360	83,140	
				321	기관 보육료	74,147,000	73,953,000	194,000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12,324,000	12,324,000	12,000,000	324,000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 지출	7,744,880	7,744,880	7,573,990	170,890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2,400,000	2,400,000	2,400,000	0
				611	단기 차입금상환	2,085,400	2,085,400	2,078,542	6,858
700	조성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 취득비	12,621,500	12,621,500	12,565,600	55,900

(특별활동비 지출÷특별활동비)×100
(12,000,000÷ 12,324,000)×100=97%

324,000원 반환(학부모 반환)

총계정원장 (세출부)

목 : 보호자 반환금
□ 계정(목/표준재무회계), 기간(2022년 03월 01일~2022년 12월 31일)

년/월/일	적 요	증빙서 번 호	예산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예산액]		324,000			
22/03/09	21년 특별활동비 정산에 따른 보호자 반환금	13			324,000	
	[월계]				324,000	
	[누계]		0		324,000	0

필요경비 정산에 따른 보호자 반환시 항목 구분 예시

28~30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보조금반환금,보호자반환금,법인회계전출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 예시

총계정원장

목 : 기타 필요경비

년/월/일	적 요	증빙서 번 호	예산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예산액]		16,800,000			
.	.	.	.	.	.	.
.	.	.	.	.	.	.
21/12/16	[특성화] 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65		20,000		5,880,000
21/12/17	[특성화] 김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72		20,000		5,860,000
21/12/18	[특성화] 박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1		20,000		5,840,000
21/12/19	[특성화] 최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9		200,000		5,640,000
21/12/20	[특성화] 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92		20,000		5,620,000
	월 계			1,280,000		
	누 계			11,180,000		5,620,000

총계정원장

목 : 기타 필요경비

년/월/일	적 요	증빙서 번 호	예산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예산액]		16,800,000			
.	.	.	.	.	.	.
.	.	.	.	.	.	.
21/12/16	[특성화] 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65		20,000		5,880,000
21/12/17	[특성화] 김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72		20,000		5,860,000
21/12/18	[특성화] 박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1		20,000		5,840,000
21/12/19	[특성화] 최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9		200,000		5,640,000
21/12/20	[특성화] 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92		20,000		5,620,000
	월 계			1,280,000		
	누 계			11,180,000		5,620,000
22/01/03	[특성화] 최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과오납 반환,계좌이체, 00은행	1153		△180,000		5,800,000

28~30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보조금반환금,보호자반환금,법인회계전출금)

총계정원장

목 : 기타 필요경비

년/월/일	적 요	증빙서 번 호	예산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예산액]		16,800,000			
.	.	.	.	.	.	.
.	.	.	.	.	.	.
21/12/16	[특성화] 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65		20,000		5,880,000
21/12/17	[특성화] 김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72		20,000		5,860,000
21/12/18	[특성화] 박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1		20,000		5,840,000
21/12/19	[특성화] 최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89		200,000		5,640,000
21/12/20	[특성화] 윤00 12월분 특성화비, 계좌이체, 00은행	1092		20,000		5,620,000
	월 계			1,280,000		
	누 계			11,180,000		5,620,000

과오납에 대한 반환 항목 부적정 예시

총계정원장 (세출부)

목 : 보호자 반환금

□ 계정(목/표준세무회계), 기간(2022년 03월 01일~2022년 12월 31일)

년/월/일	적 요	증빙서 번 호	예산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예산액]		180,000			
22/01/03	최오00 12월분 특성화비 반환금, 계좌이체, 00은행	1153			180,000	
	[월계]				180,000	
	[누계]		0		180,000	0

31 재산조성비(700관) > 시설비(710항) > 시설비(71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 개・보수비

예산 편성

- 대규모 시설 개·보수 계획 시 관련 견적을 통하여 예산 편성
- 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간 보존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 시설개보수 10,000,000원 x 1회 - 놀이터 공사 비용 5,000,000원x 1회

32 재산조성비(700관) > 시설비(710항) > 시설장비유지비(712목)

적용범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 소규모 수선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211목)'으로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외벽청소 1,200,000원 x 1회 • 소방관리점검 400,000원 x 1회 • 보일러 수리비 200,000원 x 1회

33 재산조성비(700관) > 자산구입비(720항) > 자산취득비(72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자, 책상, 사무기기 등**
-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차량 할부금 지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린이집 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조치
  ※ 법인 외 어린이집으로 차량명 부기가 불가한 어린이집인 경우 차량을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등록 후,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함
-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일시불 구입시, 할부 구입시**
- **비품대장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지출결의)함**

예산 편성

- **내구연한 1년이상 물품 구입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연간 차량 할부금의 경우 총 보육료 수입의 15%이내 예산 편성 확인**(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조성비	710 시설비	721 자산취득비	• 차량할부금 400,000원 x 12개월 •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980,000원 x 1대 •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150,000원 x 1대 • 보존식 식기 냉동고 구입비: 700,000원 x 1대

3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자산취득비)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0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	보육료	316,731,000	306,580,000	10,151,000	
		111 정부지원 보육료	265,824,000	255,756,000	10,068,000	만 0 세: 499,000원×3명×12월=17,964,000원 만 1 세: 439,000원×5명×12월=26,340,000원 만 2 세: 364,000원×7명×12월=30,576,000원 만 3 세: 280,000원×15명×12월=50,400,000원 만 4 세: 280,000원×20명×12월=67,200,000원 야간연장보육료:3,200원×2시간×16일×5명×12월=6,144,000원 합 계: 265,824,000원
		112 부모부담 보육료	50,907,000	50,824,000	83,000	만 3 세: 94,000원×15명×12월=16,920,000원 만 4,5 세: 70,000원×40명×12월=33,600,000원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129,000×3명=387,000원 합 계: 50,907,000원
02	수익자부담수입		44,032,000	26,872,000	17,160,000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211 특 별 활동비	13,200,000	0	13,200,000	영어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체육 특별활동: 7,000원×55명×12월=4,620,000원 국악 특별활동: 6,000원×55명×12월=3,960,000원
	22	기타필요경비	30,832,000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3	보조금 및 지원금		234,808,360	199,946,800	34,861,560	
	31	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311인건비 보조금	80,667,360	78,448,800	2,218,560	조리사 지원금: 800,000원×1명×12월=9,600,000원 보조교사지원금: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연장반교사지원금: 1,025,000원×3명×12월=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지원금:1,492,000원×1명×12월= 0원 연장반,보조교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원금: 56,220원×4명×12월=2,698,560원 대체교사 인건비: 84,320원×1명×10일=843,200원 대체조리사 인건비: 84,320원×1명×5일=421,600원 합 계: 80,667,360원
	32	운영보조금	145,836,000	119,848,000	25,988,000	
		321 기관 보육료	56,106,000	51,996,000	4,110,000	만0세: 528,000원×2명× 1월=1,056,000원 570,000원×3명×11월=18,810,000원 만1세: 310,000원×5명×12월=18,600,000원 만2세: 210,000원×7명×12월=17,640,000원 합 계: 56,106,000원
		322 연 장 보육료	14,688,000	12,240,000	2,448,000	만0세반: 3,000원×2시간×18일×3명 ×12월=3,888,000원 영아반: 2,000원×2시간×18일×5명 ×12월=4,320,000원 유아반: 1,000원×2시간×18일×15명×12월=6,480,000원 합 계: 14,688,000원
						합 계: 0원

총보육료: 265,824,000+50,907,000+56,106,000+14,688,000=387,525,000
총보육료×15%=58,128,750

3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자산취득비)

총보육료: 265,824,000+50,907,000+56,106,000+14,688,000=387,525,000
총보육료×15%=58,128,750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
2,160,000+0+2,584,000+2,400,000=7,144,000

세출 예산서

(단위: 원)

					280,000원 120,000원 0,000원 0원 000원
					안전공제회비: 850,000원 × 1회 = 850,000원 전화요금: 50,000원 × 12월 = 600,000원 인터넷 요금: 22,000원 × 12월 = 264,000원 통학차량 세금: 140,000원 × 2회 = 280,000원 통학차량 보험료: 600,000원 × 1회 = 600,000원 상하수도 요금: 150,000원 ×6월 = 900,000원 **합 계: 8,734,000원**
	213 연료비	0	0	0	
	214 여비	380,000	250,000	130,000	관내 출장 여비: 5,000원×5회×12월= 180,000원 관외 출장여비: 50,000원 × 4회 = 200,000원 **합 계: 380,000원**
	215 차량비	3,300,000	2,700,000	600,000	차량 수리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차량 유류대(보조): 20,000원 × 12회 = 2,400,000원 차량 소모품 구입비: 150,000원 × 4회 = 600,000원 **합 계: 3,300,000원**
	216 복리후생비	4,572,000	4,835,000	△263,000	교직원 건강검진비: 30,000원 × 15명= 450,000원 교직원 피복비: 100,000원 × 15명 = 1,500,000원 병원 치료비: 10,000원 ×15명 = 150,000원 급량비: 8,000원 × 7명 ×12회 =672,000원 교직원간식비: 10,000원×15명×12회 =1,800,000원 **합 계: 4,572,000원**
	217 기타운영비	2,160,000	1,920,000	240,000	설치·인가 당시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80,000,000원× 2.7% =2,160,000원 **합 계: 2,160,000원**

세출 예산서

(단위: 원)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	0	0	
	510	적립금	0	0	0	
		511 적립금	0	0	0	
600	상환. 반환금		2,836,600	0	2,836,600	
	610	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611 단기차입금 상환	0	0	0	
		612 장기차입금 상환	2,584,000	0	2,584,000	장기차입 이자: 20,000,000원 ×2.9%= 580,000원 장기차입 원금 상환: 334,000원 ×6개월= 2,004,000원 **합 계: 2,584,000원**
	620	반환금	252,600	0	252,600	
		621 보조금 반환금	252,600	0	252,600	1년미만퇴직 보조교사 퇴직금 반환금: 25,260원×10개월=252,600원 **합 계: 252,600원**
		622 보호자 반환금	0	0	0	
		623 법인회계 전출금	0	0	0	
700	재산조성비		41,385,000	9,797,210	31,737,790	
	710	시설비	26,030,000	6,562,210	19,467,790	
		711 시설비	25,500,000	6,352,210	19,147,790	놀이터 공사비용(보조): 5,500,000원× 1회= 5,500,000원 보육실 실내 공사비용(장기차입): 20,000,000원× 1회= 20,000,000원 **합 계: 25,500,000원**
		712 시설장비 유지비	530,000	210,000	320,000	스프링클러 수리비용: 350,000원 × 1회= 350,000원 보일러 수리비용: 180,000원 × 1회= 180,000원 **합 계: 530,000원**
	720	자산구입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721 자산취득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인덕션 구입비(보조):1,000,000원× 1대= 1,000,000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보조):1,980,000원× 1대= 1,980,000원 장남감 살균기 구입비(보조): 325,000원× 1대= 325,000원 차량 구입비(원시나보금): 9,200,000원 차량 할부금: 200,000원 × 12회 = 2,400,000원 에어컨 구입비: 800,000원× 1대= 800,000원 **합 계: 15,505,000원**

33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자산취득비)

비 품 대 장

번호	물품명	모델명	구입 연월일	구입처	가격	수량	현재			관리자	비고
							사용처	망실 파손일	현재량		
1	복사기	SL-K2074	17.03.20	00전자	2,000,000	1	사무용		1	최00	
2	식기건조기	PT-DW230	17.05.26	00전자	1,160,000	1	누리반 학습기기		3	김00	
3	에어컨	ESTI-2509N	17.11.25	00전자	1,000,000	5	각반교실		5	박00	
4											
5											
6											
7											
8											
9											
10											

연1회이상 재물조사 실시
비품대장 합산금액≥자산취득비 합산금액

세 출 결 산 서

(단위: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고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	0	0	0	0	
				622	보호자 반환	0	0	0	0	
				623	법인 회계전출금	0	0	0	0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5,000,000	5,000,000	5,000,000	0	
				712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500,000	500,000	0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 취득비	4,215,900	4,215,900	4,160,000	55,900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1,364,580	1,364,580	1,364,580	0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0	0	0	0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2,761,560	2,761,560	0	2,761,560	
계						593,532,350	593,532,350	589,694,718	3,837,632	

34 과년도지출(800관) > 과년도지출(810항) > 과년도지출(811목)

적용범위

-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중 당해연도 지출
  (지출 대상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예산 편성

- 전년도 미지급 금액 및 과년도 사업비에 대한 이월 지출 내역을 확인 하여 예산 반영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 과년도 미지급금 100,000원 x 1회 • 과년도 사업비 100,000원 x 1회

3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과년도지출)

회계출납 마감기일이 지나 지출할 경우

세입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7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	과년도 수입	521,632	480,000	41,632	
		711 과년도 수 입	521,632	480,000	41,632	2021년 2월분 미납 보육료:260,000원×2명=520,000원 2월분 국민행복카드 수수료: 1,632원×1회=1,632원 합 계: 521,632원
08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	잡수입	5,830,364	10,568,580	△4,738,216	
		811 이자수입	34,000	30,000	4,000	운영비 통장 이자 수입: 10,000원 ×2회=20,000원 세입세출외 통장 이자수입: 7,000원 ×2회=14,000원 합 계: 34,000원
		812 그 밖의 잡수입	5,796,364	10,538,580	△4,742,216	실습교사 실습비: 100,000원×2명=200,000원 차량 매각대금: 4,200,000원 안전공제회 환급금: 20,000원×1명×5회=100,000원 보육카드기금: 997,937원×1회=997,937원 21년 운영통장 적립기금: 298,427원×1회=298,427원 합 계: 5,796,364
09	전년도 이월액		2,033,000	20,991	2,012,009	
	91	전년도 이월액	2,033,000	20,991	2,012,009	
		911 전년도 이월금	45,440	20,991	24,449	전년도 이월금: 45,440원 합 계: 45,440원
		9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1,987,560	0	1,987,560	2월분 사회보험료 지출 이월 사업비:1,987,560원 합 계:1,987,5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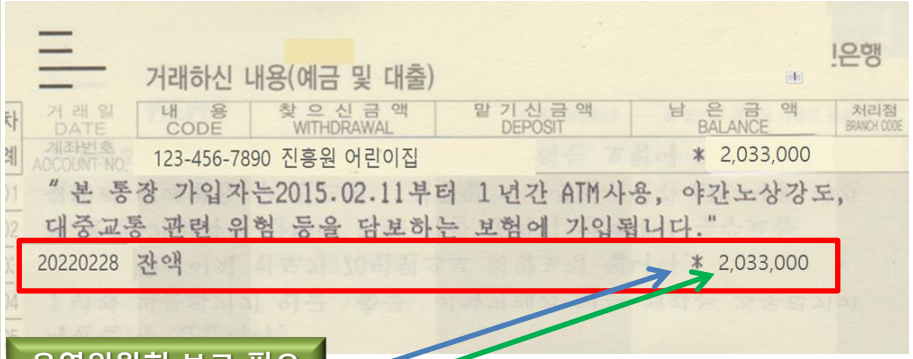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거래일 DATE	내용 CODE	찾으신금액 WITHDRAWAL	맡기신금액 DEPOSIT	남은금액 BALANCE	처리점 BRANCH CODE
계좌번호 ACCOUNT NO. 123-456-7890 진흥원 어린이집				* 2,033,000	

"본 통장 가입자는2015.02.11부터 1년간 ATM사용, 야간노상강도, 대중교통 관련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20228 잔액 * 2,033,000

운영위원회 보고 필요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800	과년도지출		1,987,560	0	1,987,560	
	810	과년도지출	1,987,560	0	1,987,560	
		811 과년도 지 출	1,987,560	0	1,987,560	2월분 사회보험료 미지출 금액: 1,987,560원 합 계: 1,987,560원
900	잡지출		0	10,800	△10,800	
	910	잡지출	0	10,800	△10,800	
		911 잡지출	0	10,800	△10,800	

3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과년도지출)

현 금 출 납 부

담 당	원 장
金誠汝印	金誠汝印

연월일	적요	계정과목	증빙서 번호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3/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1	45,440		45,440
3/1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 이월사업비	2	1,987,560		2,033,000
3/2	새싹반 최00,김00,오00의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3	180,000		2,213,000
3/2	3월2일 식단 급식 재료비 (양파, 감자, 돼지고기 등)	급식·간식재료비	4		69,800	2,143,200
⋮	⋮	⋮	⋮	⋮	⋮	⋮
월계				22,784,854	21,824,071	960,783
누계				22,784,854	21,824,071	960,783

34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과년도지출)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01				金誠汝印	金誠汝印
관	전년도이월액	발의		2022.03.01	
항	전년도이월액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목	전년도이월금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금사만오천사백사십원정 (₩45,440)					
적 요	전년도 이월금				
비 고	2월말 통장 잔액: 2,003,000원중 전년도이월금: 45,44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987,560원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22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제	담 당	원 장
2022-03-01 0002				鄭合昊印	金誠汝印
관	전년도이월액	발 의		2022.03.01.	
항	전년도이월액	현금출납부등재		2022.03.01.	
목	전년도이월사업비	총계정원장등재		2022.03.01.	
금일백구십팔만칠천오백육십원정 (₩1,987,560)					
적 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2월분 사회보험료				
비 고	2월말 통장잔액: 2,033,000원중 순수이월금: 45,44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987,560원				

35 잡지출(900관) > 잡지출(910항) > 잡지출(911목)

적용범위
-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예산 편성
- 당해연도 지출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되 미편성 가능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 기타 잡지출 500,000원 x 1회

36 예비비(1000관) > 예비비(1010항) > 예비비(1011목)

적용범위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
- 기 편성한 예산항목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
- 예비비의 경우 **업무추진비(220항)로 지출 불가**

예산 편성

- 전체 세출예산의 2%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

과 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 예비비 2,537,250원 x 1회

36 세입 · 세출 계정 과목별 예시 (예비비)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총 합 계			630,973,079	544,942,960	86,030,119	
100	인건비		392,458,234	369,882,120	22,576,144	
	110	원장 인건비	47,394,000	42,105,600	5,288,400	
		111 원장급여	44,694,000	39,705,600	4,988,400	기본급: 3,724,500원 × 12개월 = 44,694,000원 합 계: 44,694,000원
		112 원장수당	2,700,000	2,400,000	300,000	원장 활동비수당:200,000원× 12개월 = 2,400,000원 00,000원 2,700,000원
		121 보육 교직원급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주임교사: 2,123,000원 × 1명 × 12개월 = 25,476,000원 교 사: 2,018,400원 × 5명 × 12개월 =121,104,000원 누리보조: 1,025,000원 × 1명 × 12개월 = 12,300,000원 보조교사: 1,025,000원 × 1명 × 12개월 =12,300,000원 연장반교사: 1,025,000원× 3명 × 12개월 =36,900,000원 야간연장교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조 리 사: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운 전 원: 1,914,440원 ×1명 × 12개월 =22,973,280원 합 계: 276,999,840원
		122 보육 교직원수당	7,200,000	5,400,000	1,800,000	주임수당: 100,000원×1명×12개월 = 1,200,000원 아동인권선임수당:50,000원×1명×12개월 = 600,000원 건강관리수당:100,000원 ×6명× 1회 =600,000원 자기계발비수당:100,000원 ×6명×1회 =600,000원 명절·휴가비: 100,000원 ×14명 ×3회 = 4,200,000원 합 계: 7,200,000원

630,973,079×2%=12,619,461

예산 총액의 2%이내 편성

세출 예산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700	재산조성비		41,385,000	9,797,210	31,737,790	
	710	시설비	26,030,000	6,562,210	19,467,790	
		711 시설비	25,500,000	6,352,210	19,147,790	
		712 시설장비 유지비	530,000	210,000	320,000	스프링클러 수리비용: 350,000원 × 1회= 350,000원 보일러 수리비용: 180,000원 × 1회= 180,000원 합 계: 530,000원
	720	자산구입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721자산취득비	15,505,000	3,235,000	12,270,000	
800	과년도지출		0	0	0	
	810	과년도지출	0	0	0	
		811 과년도 지 출	0	0	0	
900	잡지출		0	0	0	
	910	잡지출	0	0	0	
		911 잡지출	0	0	0	
1000	예비비		5,772,845	2,322,140	3,450,845	
	1010	예비비	5,772,845	2,322,140	3,450,845	
		1011 예비비	5,772,845	2,322,140	3,450,705	예비비: 5,772,845 합 계: 5,772,845원

0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지자체 규정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자료는 교육생에 한하여 지급되는 교재로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행위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